

조선시대 기상역사자료 번역집

- 관상감 계목 외 3종 -

2017



기상서비스진흥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목 차

I. 관상감계목	1
1. 해제	7
2. 번역	47
3. 한자음	73
 II. 명시력	 89
1. 해제	91
 III. 삼력	 95
1. 해제	97
 IV. 연신방위지도	 101
1. 해제	103

관상감계목

觀象監啓目 번역

1. 관상감계목의 원문과 번역문에는 약간의 편집을 가했다. 모든 부분에 스타일(F6)을 지정해 두었다.

1. 원문에도 문단 구분을 해 두었다.

본 자료의 원문에는 문단 구분이 없고, 고전 한문의 경우 원문에 없는 문단 구분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읽기의 편의를 위해 의미에 따라 적당히 문단을 나누었다.

1. 원문에서 높임의 표시로 한 칸 높게 쓰거나, 한 칸을 비우고 쓴 것은 반영하지 않았다.

1. 원문 서명 부분의 양식은 어느 정도 반영했다. 서명자의 이름을 날짜 아래에 쓴 것, 서명자 관직명 다음의 ‘臣’자를 조금 작게 쓴 것 등이다.

1. 1790년 (정조 14년, 乾隆 55년, 庚戌) 12월 25일 觀象監啓目

觀象監啓目. 來辛亥年清鄉書考准爲白有昆, 大小月, 二十四氣, 合朔弦望, 日出入時刻, 幾皆相合.

而二月春分, 清十六日, 鄉十七日, 相左一日是白乎乃, 我國, 則節氣時刻, 加四十二分, 故如當子時初正交換時刻, 則差以一日, 自前已然. 此則詳載於皇書各省節氣時刻下朝鮮間是白乎朏.

五月二十二日, 下弦時刻, 有一分相左是白乎乃, 更令曆官推步, 則元無差誤之端是白乎朏.

其他曆註有十六處不同者, 而或值彼我國入節時刻早晚, 或值彼中忌辰日, 則有此相左, 勢所固然是白遣.

五月初五日己卯下, 不宜出行, 針刺, 栽種, 清有鄉無, 十二月二十九日己巳下, 不宜出行, 清有鄉無是白乎乃, 此等相左, 元非關係, 自前竝從鄉書, 今亦依此施行何如.

乾隆五十五年十二月二十五日

提調行判敦寧_臣李 1)

提調知敦寧_臣朴

啓

관상감(觀象監)²⁾에서 올리는 계목(啓目)³⁾.

오는 신해년(1791) 청나라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를 대조해보니,⁴⁾ 큰 달과 작은 달,⁵⁾ 24기

1) 문서가 현재 여기 즈음에서 오려져 있어서, 아래 두 줄 부분(“提調知敦寧_臣朴”과 “啓”)은 그 위의 부분과 분리되어서 다음 해 계목의 오른쪽에 붙어 있다. 그러나 계목이 등서(騰書)되는 순서를 고려하면 이 두 부분이 원래 하나의 문서였던 것은 분명하다.

2) 관상감(觀象監): 조선시대에 천문(天文)·역산(曆算)·지리(地理)·택길(擇吉)·시보(時報) 등을 담당하던 관서로, 본 자료의 주제인 조선역서-중국역서 대조 작업은 역산 업무의 일부였다.

3) 계목(啓目): 국왕에게 상주할 일이 있을 때 작성하는 문서의 하나로, 그리 크지 않은 일일 때 계목을 작성했다.

4) 청나라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를 대조해보니: 조선시대에는 해마다 연말에 조선에서 편찬·간행한 역사와 중국에서 편찬·간행한 역사 사이의 차이 여부를 대조·검토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관상감에서 역(曆) 계산을 제대로 했는지 검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에서 역법 수정이 빈번하던 시기에는 새로운 수정 사항이 있지는 않은지 알아보는 작업이기도 했다. 본 자료에 실린 계목들의 주제는 그해에 수행한 이 중국역서-조선역서 대조 작업의 결과와 그에 대한 관상감의 의견이다.

5) 큰 달과 작은 달: 조선시대에 역사 제작에 쓰던 역법은 태음태양력이었으므로 한 달의 길이를 달의 위상 변화를 기준으로 정했다. 즉 달이 합삭(合朔)에서 상현, 보름, 하현을 거쳐 다시 합삭에 이르는 삭망월(朔望月)이 한 달이었다. 이때 합삭시각이 드는 날을 초하루로 정했다. 그런데 1삭망월은 약 29.530589일이므로 삭망월을 기준으로 하면, 어떤 달은 한 달이 30일이 되고, 어떤 달은 29일이 된다. 또 1삭망월은 1일의 정수배가 아니고, 그 길이도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큰 달과 작은 달이 번갈아 드는 데에는 정해진 패턴이 있지 않다. 어떤 달이 큰 달이 될지 작은 달이 될지를 공식을 써서 간단히 구할 수는 없다. 각 달에 대해 하나하나 정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한해의 월의 대소 배치는 정하기는 쉽지 않은 반면 그것이 결정되어야 그해 매일의

(氣),⁶⁾ 합삭(合朔)·상하현·보름,⁷⁾ 해 뜨는 시각·해지는 시각⁸⁾이 거의 모두 서로 맞습니다.

그런데 2월 춘분(春分)이 청나라 역서에는 16일, 우리나라 역서에는 17일로 되어 있어서 서로 하루가 차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절기 시각은 청나라 북경의 절기 시각에 42분을 더합니다.⁹⁾ 그런 까닭에 만약 절기 시각이 자시(子時)의 초시(初時)가 정시(正時)로 바뀌는 때에 있게 되면 하루가 차이 납니다.¹⁰⁾ 이전부터 이미 그래왔습니다. 이는 중국 역서[皇書]의 ‘각성절기시각(各省節氣時刻)’ 아래에 있는 ‘조선(朝鮮)’란에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¹¹⁾

5월 22일 하현(下弦) 시각에 1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관(曆官)¹²⁾에게 다시 명하여 추보하게 하니 차오(差誤)를 낳은 실마리가 원래 없습니다.

그 밖에 역주(曆註)¹³⁾에 서로 같지 않은 것들이 열여섯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 어

날짜가 정해지므로, 그것을 정하는 일은 역서 편찬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 6) 24기(氣): 1태양년, 즉 지구가 태양을 한 번 공전하는 기간을 24개의 시점으로 나누어 각각에 이름을 붙여둔 것이다. 12개의 절기(節氣)와 12개의 중기(中氣)가 번갈아 배치된다. 이것은 태음태양력에서 태양의 연주 운동을 반영하는 양력(陽曆) 요소 중 하나다. 대통력법(大統曆法)을 쓰던 조선 전기까지는 1년을 일정한 시간 간격(약 15.22일)으로 나누어 각 기에 드는 시점(入氣時刻)을 배치했으나, 조선 후기의 시헌력법에서는 태양이 황도 상에서 일정한 각도(15°)를 움직일 때마다 각 기에 드는 시점을 배치하는 방식을 썼다. 각 기에 드는 시점을 정하는 일은 역서의 골격을 구성하는 중요한 작업이었다. 사일(社日)·한식(寒食)·삼복(三伏)·납일(臘日)·토왕용사(土王用事) 등 일상과 의례를 위해 중요한 여러 날들이 그것에 따라 정해졌으며, 무엇보다도 윤달의 위치가 그것에 따라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역서에는 각 기에 드는 시각과 날짜를 적어 넣었다.
- 7) 합삭(合朔)·상하현·보름: 합삭(合朔)은 지구의 공전궤도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달과 태양이 정확히 같은 방향에 있는 때, 즉 달과 태양의 황경(黃經)이 같은 때를 말한다. 이즈음 지구에서는 달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반대로 달이 태양과 정반대 방향에 있을 때, 즉 달과 태양의 황경이 180° 차이 나는 때를 망(望)이라고 한다. 이때 달은 보름달이 된다. 달이 합삭에서 망으로 옮겨가는 중에 황경차가 90°일 때를 상현(上弦), 망에서 합삭으로 가는 중에 황경차가 270°일 때를 하현(下弦)이라 한다. 역서에는 매월 합삭·상현·망·하현이 드는 날과 그 시각을 적어 넣었다.
- 8) 해 뜨는 시각·해지는 시각: 연중 일출·일몰 시각과 낮시간·밤시간의 길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려주는 항목이다. 조선의 역서에서는 한양의 위치를 기준으로 했고, 며칠마다 한 번 꼴로 적어 넣었다. 일출·일몰 시각은 계절에 따라 계속 달라지지만, 관측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면(이 경우에는 한양) 1태양년 동안의 그것의 변화 패턴은 정해지게 마련이다. 한 번만 계산해 두면 해가 바뀐다고 다시 계산할 필요는 없다. 해마다 계산을 거쳐 새로 정해야 하는 것은 일출·일몰 시각을 적어 넣을 날짜였다. 즉 태양이 일 년 동안 황도를 따라 운행하며 거쳐 가는 지점들을 적당한 개수만큼 지정해서, 각 지점에 상응하는 날의 일출·일몰 시각을 미리 계산해 두고서, 그 48개의 날들이 이번 해의 어떤 날짜들에 해당하는지를 찾아서 역서에 기입하는 방식을 썼던 것이다. 청나라 역서와의 대조 작업에서 검사한 것은 그 날짜들이 같은지 여부였다.
- 9) 우리나라의 절기 시각은 청나라 북경의 절기 시각에 42분을 더합니다: 조선 역서의 기준 지역은 한양이고, 청나라 역서의 기준 지역은 북경이었다. 한양은 북경보다 동쪽에 있다. 때문에 어떤 천체 현상이 일어났을 때 두 지역의 지역 시간은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절기에 드는 일처럼 위치에 관계없이 두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천체 현상의 경우에 그렇다. 조선 후기에 두 지역의 경도차, 당시의 용어로는 ‘동서편도(東西偏度)’로는 10° 30'이 통용되었고, 그것에 상응하는 시간차가 42분이었다.
- 10) 만약 절기 시각이 자시(子時)의 초시(初時)가 정시(正時)로 바뀌는 때에 있게 되면 하루가 차이 납니다: 조선 시대의 시각 제도에서 하루는 12시(時)로 나뉘었고, 하나의 시는 초시(初時)와 정시(正時)라는 두 개의 반시(半時)로 나뉘었다. 그 중 자시(子時)는 지금의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1시까지에 해당했다. 날짜가 바뀌는 자정을 가운데 끼고 있어서 초시는 전날에 속하고 정시는 다음 날에 속했다. 만약 어떤 절기에 드는 일이 자정 즈음에 일어나서 42분 간격을 두고 한양의 절기 시각은 자시의 정시에 있고 북경의 절기 시각은 자시의 초시에 있게 되면, 단지 절기 시각만이 아니라 절기 날짜까지 차이 나게 된다.
- 11) 이는 중국 역서[皇書]의 ‘각성절기시각(各省節氣時刻)’ 아래에 있는 ‘조선(朝鮮)’란에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청나라에서 발행하는 역서에는 수도 북경만이 아니라 각 지역의 연중 일출·일몰 시각과 절기시각 자료도 수록했는데, 조선 지역에 관한 자료도 함께 수록했다. 그 자료는 청나라 역서와의 대조 작업에서 주요한 검토 대상의 하나였다.
- 12) 역관(曆官): 조선시대에 역서의 편찬 등 역법(曆法)을 다루는 일을 하는 관원을 흔히 이렇게 불렀는데, 관상감 천문학 부문에 소속되어 있었다.

떤 것은 저 나라와 우리나라의 절기 시각의 이르고 늦음 때문인 경우에 해당하고, 어떤 것은 저들의 기신일(忌辰日)¹⁴⁾ 때문인 경우에 해당하니,¹⁵⁾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은 형세상 당연한 일입니다.

5월 5일 기묘(己卯) 아래의 ‘불의(不宜) 출행(出行)¹⁶⁾ · 침자(針刺)¹⁷⁾ · 재종(栽種)¹⁸⁾’이 청나라 역서에는 있는데 우리나라 역서에는 없고, 12월 29일 기사(己巳) 아래의 ‘불의 출행’이 청나라 역서에는 있는데 우리나라 역서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차이들은 원래 관계 없습니다. 전부터 모두 우리나라 역서를 따라왔습니다. 이번에도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건륭 55년(1790) 12월 25일

제조(提調)¹⁹⁾ 행판돈령 신 이(李)

제조 지돈령 신 박(朴)

윤허함.

13) 역주(曆註): 역서에는 역(曆)의 골간이 되는 시간 구획에 관련된 사항들 이외에 길흉(吉凶) 의기(宜忌)에 관한 다양한 사항들도 수록했는데, 그것을 ‘역주’라고 했다. 본 자료에서 언급되는 역주는 주로 그날그날의 ‘해도 좋은 일(宜)’과 ‘하면 안 좋은 일(不宜)’을 알려주는 역주들이다.

14) 기신일(忌辰日): 기일(忌日), 즉 돌아가신 날을 높여 이르는 말.

15) 어떤 것은 저들의 기신일(忌辰日) 때문인 경우에 해당: 청나라 역서에서는 황실의 역대 주요 인물들의 제삿날에 해당하는 날짜에는 역주를 달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이로 인한 차이는 조선에서 간단히 무시되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청나라에서 역서를 편찬할 때 고려하는 기신일들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있어야 했다.

16) 출행(出行): 역서의 역주(曆註)에 쓰는 용사(用事)의 하나로, 외출, 여행, 출장, 출국 등의 일.

17) 침자(針刺): 역서의 역주(曆註)에 쓰는 용사(用事)의 하나로, 침이나 뜸을 시술하는 일.

18) 재종(栽種): 역서의 역주(曆註)에 쓰는 용사(用事)의 하나로, 꽃이나 나무, 작물 등을 심는 일.

19) 제조(提調): 조선시대에 1품이나 2품의 전현직 고위 관료를 영사(領事)나 제조(提調)라는 이름으로 여러 관서에 배정해서 지휘·감독하는 일을 맡겼는데, 이것은 각 관서의 본래의 관제(官制)와는 별도로, 그 위에 있는 것이었다. 관상감에는 영의정이 당연직으로 맡는 영사와 그 아래에 두 명의 제조가 있었다. 임금에게 올리는 보고서도 영사와 제조의 이름으로 올렸다.

2. 1791년 (정조 15년, 乾隆 56년, 辛亥) 12월 25일 觀象監啓目

觀象監啓目. 來壬子年清鄉曆考准爲白有昆, 大小月, 二十四氣, 合朔弦望, 日出入時刻分, 舉皆相合是白乎矣.

秋社日, 鄉曆則八月初二日, 清曆則八月十二日是白如乎, 大抵置社之法, 用春秋分前後近戊, 而明年秋分, 在於八月初七日, 前五日戊辰, 後五日戊寅, 與秋分相距同, 故鄉曆則取其前, 清曆則取其後, 參之曆式, 俱無所得.

至於曆註中十五處不同者, 或因彼中忌辰日, 或因節氣早晚, 致此相左, 而元非大段. 竝從鄉曆施行何如.

乾隆五十六年十二月二十五日

提調兵曹判書_臣徐

提調吏曹參判_臣朴

啓

관상감에서 올리는 계목.

오는 임자년(1792) 청나라 역서와 우리나라 역서를 대조해보니, 큰 달과 작은 달, 24기, 합삭(合朔)·상하현·보름, 해 뜨는 시각·해지는 시각이 거의 모두 서로 맞습니다.

그런데 가을 사일(社日)²⁰⁾이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8월 2일인데, 청나라 역서에서는 8월 12일입니다. 그러나 무릇 사일을 두는 법은 춘분·추분 전후의 가까운 무일(戊日)²¹⁾을 쓰는 것인데, 내년에는 추분이 8월 7일에 있고 5일 전이 무진(戊辰), 5일 후가 무인(戊寅)이어서 추분과의 거리가 서로 같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 역서는 그 중 앞의 것을 취하고 청나라 역서는 그 중 뒤의 것을 취한 것입니다.²²⁾ 역식(曆式)²³⁾을 참조해 보면 양쪽 모두 구해질 것이 없습니다.

역주(曆註) 중 열다섯 군데의 서로 다른 것들은 저들의 기신일(忌辰日) 때문이거나 두 나라 절기 시각의 이르고 늦음 때문입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은 원래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우리나라 역서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20) 사일(社日): 토지의 신인 사(社)와 관련된 날로, 봄의 사일[春社]과 가을의 사일[秋社]이 있었다. 춘사에는 한해의 농사가 잘 되기를 빌고, 추사에는 수확에 감사하는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21) 무일(戊日): 하루하루의 날짜에 배정된 간지(干支)인 일진(日辰) 중 앞부분 간(干)이 무(戊)인 날. 열흘에 한 번씩 돌아온다.

22) 조선 후기에 사일(社日)을 두는 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의 <작력식(作曆式)>류 문헌들에서 두 가지 방법을 나란히 소개하고 있다. 하나는 입춘(立春)이나 입추(立秋) 후 다섯 번째 무일(戊日)을 각각 춘사(春社)와 추사(秋社)로 정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이 계목에서 언급하고 있는, 춘분이나 추분 전후로 가장 가까운 무일을 각각 춘사와 추사로 정하는 방법이다. 여기서는 다음 해 추분과 그 앞뒤 무일 사이의 간격이 모두 5일이어서 둘 중 어느 쪽을 추사로 정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3) 역식(曆式): 조선후기에 작성된 역서 제작 방법에 관한 문헌들 중에 역서에 역주(曆註)를 달 때 따르는 규칙들을 모아놓은 매뉴얼들이 있었다. 『작력식(作曆式)』 또는 『증보작력식(增補作曆式)』 등의 이름을 가진 그런 문헌을 약칭한 것으로 보인다.

건륭 56년(1791) 12월 25일

제조 병조판서 신 서(徐)

제조 이조참판 신 박(朴)

윤허함.

3. 1804년 (순조 4년, 嘉慶 9년, 甲子) 12월 25일 觀象監啓目

觀象監啓目. 來乙丑年清鄉書考准爲白有昆, 大小月, 二十四氣, 合朔弦望, 日出入時刻, 一一脗合是白遣.

曆註中有十七處不同者, 而此則皆因彼中忌辰日, 例必相差是白乎旃.

唯正月二十三日戊申下, 宜祭祀, 清無鄉有, 九月十八日丁卯下, 上官, 冠帶, 出行, 移徙, 裁衣, 修造動土, 豎柱上樑, 開市, 立券, 交易, 納財, 安碓磑, 牧養, 清有鄉無, 十二月大寒, 清則置於初一日, 鄉則置於初二日, 相差一日是白乎乃,

此則皆因節氣時刻早晚, 我國則例加四十二分, 故此等相左, 勢所必然. 竝從鄉書施行何如.

嘉慶九年十二月二十五日

提調行戶曹判書臣趙 24)

提調承政院都承旨臣朴

啓

관상감에서 올리는 계목.

오는 을축년(1805) 청나라 역서와 우리나라 역서를 대조해보니, 큰 달과 작은 달, 24기, 합삭(合朔)·상하현·보름, 해 뜨는 시각·해지는 시각이 하나하나 꼭 맞습니다.

역주(曆註) 중 열일곱 군데에 서로 같지 않는 것들이 있으나 이것들은 모두 저들의 기신일(忌辰日) 때문에 생긴 것으로 서로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정월 23일 무신(戊申) 아래의 ‘의(宜) 제사(祭祀)’가 청나라 역서에는 없는데 우리나라 역서에는 있고, 9월 18일 정묘(丁卯) 아래의 ‘상관(上官)²⁵⁾·관대(冠帶)²⁶⁾·출행(出行)·이사(移徙)²⁷⁾·재의(裁衣)²⁸⁾·수조동토(修造動土)²⁹⁾·수주상량(豎柱上樑)³⁰⁾·개시(開市)³¹⁾·입권(立券)³²⁾·교역(交易)³³⁾·납재(納財)³⁴⁾·안대애(安碓磑)³⁵⁾·목양(牧養)³⁶⁾’이 청

24) 문서가 현재 여기 즈음에서 오래져 있어서, 아래 두 줄 부분(“提調承政院都承旨臣朴”과 “啓”)은 그 위의 부분과 분리되어서 다음 해 계목의 오른쪽에 붙어 있다. 그러나 가경 9년의 절목 다음에 가경 10년의 절목을 등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두 부분이 원래 하나의 문서였던 것은 분명하다.

25) 상관(上官): 역서의 역주(曆註)에 쓰는 용사(用事)의 하나로, 취임·취직 하는 일.

26) 관대(冠帶): 역서의 역주(曆註)에 쓰는 용사(用事)의 하나로, 남녀의 관례(冠禮), 즉 성인식을 치르는 일.

27) 이사(移徙): 역서의 역주(曆註)에 쓰는 용사(用事)의 하나로, 이사하거나, 거처를 옮기는 일.

28) 재의(裁衣): 역서의 역주(曆註)에 쓰는 용사(用事)의 하나로, 신부 예복을 만들거나, 수의(壽衣)를 만드는 일.

29) 수조동토(修造動土): 역서의 역주(曆註)에 쓰는 용사(用事)의 하나로, 건물을 수리하거나 짓는 일과, 공사를 시작하는 일.

30) 수주상량(豎柱上樑): 역서의 역주(曆註)에 쓰는 용사(用事)의 하나로, 기둥을 세우고 들보를 올리는 일.

31) 개시(開市): 역서의 역주(曆註)에 쓰는 용사(用事)의 하나로, 상역서의 역주(曆註)에 쓰는 용사(用事)의 하나로, 점이나 공장을 세워서 개업하는 일, 또는 연초에 영업이나 생산을 개시하는 일.

32) 입권(立券): 역서의 역주(曆註)에 쓰는 용사(用事)의 하나로, 계약을 맺는 일.

33) 교역(交易): 역서의 역주(曆註)에 쓰는 용사(用事)의 하나로, 거래·매매하는 일.

나라 역서에는 있는데 우리나라 역서에는 없고, 12월 대한(大寒)을 청나라 역서에서는 1일에 두었는데,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2일에 두어서 서로 하루가 차이 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절기 시각의 이르고 늦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절기 시각은 언제나 청나라 북경의 절기 시각에 42분을 더합니다. 그러니 이런 차이는 형세상 필연적인 것입니다. 모두 우리나라 역서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가경 9년(1804) 12월 25일

제조 행호조판서 신 조(趙)

제조 승정원도승지 신 박(朴)

윤허함.

34) 납재(納財): 역서의 역주(曆註)에 쓰는 용사(用事)의 하나로, 부동산이나 물건을 사들이거나, 외상값을 거두거나, 임대료를 받거나, 빚을 독촉하거나, 곡식을 창고에 들이는 일.

35) 안대애(安碓礮): 역서의 역주(曆註)에 쓰는 용사(用事)의 하나로, 방아나 맷돌을 놓는 일.

36) 목양(牧養): 역서의 역주(曆註)에 쓰는 용사(用事)의 하나로, 가축을 기르는 일. 여기서는 주로 가축의 구유·우리·횡목·훼 등을 설치하는 일을 의미한다.

4. 1805년 (순조 5년, 嘉慶 10년, 乙丑) 12월 22일 觀象監啓目

觀象監啓目. 來丙寅年清鄉書考准爲白有昆, 大小月, 合朔弦望, 二十四氣, 日出入時刻, 舉皆脗合是白乎矣.

惟六月大暑, 清置於初八日, 鄉置於初九日, 十二月土王用事, 清置於初九日, 鄉置於初十日, 十二月立春, 清置於二十七日, 鄉置於二十八日是白乎乃, 此則皆因彼我國立節時刻早晚, 我國則例加四十二分, 故致此相左, 勢所固然是白乎旡.

末伏, 清置於六月二十四日, 鄉置於七月初五日, 置伏之法, 立秋後第一庚爲末伏, 而立秋若值庚日, 時刻在午前, 則立秋日爲末伏, 在午後, 則越置次庚者, 昭載於作曆式是白遣.

曆註中有十³⁷⁾四處不同者, 若置彼中忌辰日, 則清書之闕而不錄, 自是例也. 竝從鄉書施行何如.

嘉慶十年十二月二十二日 領事臣徐

提調行兵曹³⁸⁾判書臣金

提調吏³⁹⁾參判臣朴

啓

관상감에서 올리는 계목.

오는 병인년(1806) 청나라 역서와 우리나라 역서를 대조해보니, 큰 달과 작은 달, 합삭(合朔)·상하현·보름, 24기, 해 뜨는 시각·해지는 시각이 거의 모두 꼭 맞습니다.

다만 6월 대서(大暑)를 청나라 역서에서는 8일에 두었는데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9일에 두었고, 12월 토왕용사(土王用事)⁴⁰⁾를 청나라 역서에서는 9일에 두었는데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10일에 두었고, 12월 입춘(立春)을 청나라 역서에서는 27일에 두었는데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28일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저 나라와 우리나라의 절기 시각의 이르고 늦음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절기 시각은 언제나 청나라 북경의 절기 시각에 42분을 더합니다. 그러니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은 형세상 당연한 것입니다.

말복(末伏)을 청나라 역서에서는 6월 24일에 두었는데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7월 5일에

37) 원문의 글자가 아주 분명하지는 않지만, ‘十’자로 보임.

38) 원문의 글자가 아주 분명하지는 않지만, ‘兵曹’로 보임.

39) 문서 보존 상태 때문에 읽을 수 없으나, 문맥상 ‘曹’일 것.

40) 토왕용사(土王用事): 오행(五行)을 네 계절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토왕용사(土旺用事) 또는 줄여서 토용(土用)이라고도 했다. 오행 중 목(木), 화(火), 금(金), 수(水)를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배정하고, 남은 토(土)는 각 계절에 해당하는 기간에서 마지막 18일씩을 떼어서 배정했다. 이렇게 하면 일 년의 1/5 정도의 날짜가 토에 배정되는데, 그 기간을 토왕용사라 했다. 이때는 흙과 관련된 토목·건축 작업을 하는 것을 꺼렸다. 그 기간에는 토기(土氣)가 왕성하니 그것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였다. 역서에는 각 토왕용사 기간의 첫날에 표시를 해 두었다.

두었습니다. 그러나 복일(伏日)을 두는 법이 ‘입추(立秋) 뒤 첫 번째 경일(庚日)⁴¹⁾을 말복으로 하되, 입추가 경일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추 시각이 오전에 있으면 입추일을 말복으로 하고, 입추 시각이 오후에 있으면 넘겨서 다음 경일에 말복을 둔다’라는 것은 『작력식(作曆式)』⁴²⁾에 분명하게 실려 있습니다.⁴³⁾

역주(曆註) 중에 열네 군데 서로 같지 않은 것은 만약 저들의 기신일(忌辰日)에 해당되면 청나라 역서에서는 [그날의 역주를] 빼고 기록하지 않는 것이 본디 관례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우리나라 역서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가정 10년(1805) 12월 22일 영사 신 서(徐)

제조 행병조판서 신 김(金)

제조 이조참판 신 박(朴)

윤허함.

41) 경일(庚日): 하루하루의 날짜에 배정된 간지(干支)인 일진(日辰) 중 앞부분 간(干)이 경(庚)인 날. 열흘에 한 번씩 돌아온다.

42) 작력식(作曆式): 역서에 역주(曆註)를 달 때 따르는 규칙들을 모아놓은 매뉴얼. 『작력식(作曆式)』 또는 『증보작력식(增補作曆式)』 등의 이름을 가진 조선후기 문헌들이 여러 종 남아 있다.

43) 삼복(三伏) 중 말복(末伏)의 날짜는 조선의 역서와 청나라 역서가 차이를 보인 경우가 몇 차례 있었다. 대개 ‘입추 당일이 경일(庚日)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추 시각이 오전에 있는 경우와 오후에 있는 경우를 나누어서 정한다’는 규정을 청나라에서 충실하게 따르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헌종 14년(1848)부터는 시각을 오전·오후로 나누어서 정한다는 규정을 버리고, 시각과 무관하게 입추 당일을 말복으로 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청나라에서 규정을 바꾼 것으로 보고 그것을 따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순조 6년(1806) 역서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 계목을 통해 처음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5. 1809년 (순조 9년, 嘉慶 14년, 己巳) 12월 21일 觀象監啓目

觀象監啓目. 來庚午來⁴⁴⁾淸鄉曆考准爲白有昆, 大小月, 二十四氣, 合朔弦望, 日出入時刻, 幾皆相合是白乎矣.

五月合朔, 淸午正二刻四分, 鄉午正二刻五分, 相差一分是白遣, 七月日出入, 淸置於十九日, 鄉置於十八日, 相差一日是白乎等以, 更令曆官, 詳細推步是白乎矣, 終不得差誤之端是白如乎, 或因用法之不同, 致此一二處參差, 亦多已例是白乎旆.

其餘曆註中十八處不同者, 皆因彼中忌辰日淸書闕而不錄, 勢所固然. 竝從鄉書施行何如.

嘉慶十四年十二月二十一日

提調吏曹判書_臣金 45)

提調吏曹參判_臣李

啓

관상감에서 올리는 계목.

오는 경오년(1810) 청나라 역서와 우리나라 역서를 대조해보니, 큰 달과 작은 달, 24기, 합삭(合朔)·상하현·보름, 해 뜨는 시각·해지는 시각이 거의 모두 서로 맞습니다.

그런데 5월 합삭(合朔)이 청나라 역서에서는 오정(午正) 2각 4분인데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오정 2각 5분이어서 서로 1분이 차이내고, 7월 해 뜨는 시각·해지는 시각을 청나라 역서에서는 19일에 두었는데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18일에 두어서 서로 하루가 차이 납니다. 그래서 역관(曆官)에게 다시 명하여 상세하게 계산하게 하였는데 차오(差誤)를 낳은 실마리를 끝내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용법(用法)⁴⁶⁾이 달라서 이처럼 한두 군데 어긋나는 데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또한 전례(前例)가 많이 있습니다.

그 밖에 역주(曆註) 중 18군데 같지 않은 것들은 모두 저들의 기신일(忌辰日)에는 청나라 역서에 [해당일의 역주를] 빼고 기록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이니, 형세상 당연한 일입니다. 모두 우리나라 역서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가경 14년(1809) 12월 21일

제조 이조판서 신 김(金)

제조 이조참판 신 이(李)

44) 來: ‘年’의 오기인 것으로 보임.

45) 문서가 현재 여기 즈음에서 오려져 있어서, 아래 두 줄 부분(“提調吏曹參判_臣李”와 “啓”)은 그 위의 부분과 분리되어서 다음 해 계목의 오른쪽에 붙어 있다. 그러나 가경 14년의 절목 다음에 가경 15년의 절목을 등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두 부분이 원래 하나의 문서였던 것은 분명하다.

46) 용법(用法): 문맥으로 보아 역법의 정식 규정이 아닌,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채용하는 방법 정도를 의미하는 것 같다. 이것이 흠천감의 것과 다르다고 해서 딱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는 뉘앙스를 품고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윤허함.

6. 1810년 (순조 10년, 嘉慶 15년, 庚午) 12월 22일 觀象監啓目

觀象監啓目. 來辛未年清鄉曆考准爲白有昆, 大小月, 二十四氣, 合朔弦望, 日出入時刻, 幾皆脗合是白乎矣.

二月合朔, 清書爲午初三刻十一分, 鄉書爲午初三刻十二分, 八月望, 清書爲申初初刻十分, 鄉書爲申初初刻九分, 兩處相差各爲一分是白如乎, 更令曆官, 一依曆象考成本法, 細推詳覈是白乎則, 蓋因秒微零數之或收或捨, 而實非乘除比例之做錯是白乎歟.

閏三月十五日, 不宜出行, 清無鄉有, 五月十五日, 療病, 清無鄉有, 此則彼我國用法之不同, 元無關係是白乎歟.

其他曆註中十四處不同者, 若值彼中忌辰日, 則清書之闕而不錄, 自是例也. 竝從鄉書施行何如.

嘉慶十五年十二月二十二日

提調吏曹判書臣朴

提調行護軍臣李

啓

관상감에서 올리는 계목.

오는 신미년(1811) 청나라 역서와 우리나라 역서를 대조해보니, 큰 달과 작은 달, 24기, 합삭(合朔)·상하현·보름, 해 뜨는 시각·해지는 시각이 거의 모두 꼭 맞습니다.

그런데 2월 합삭(合朔)이 청나라 역서에서는 오초(午初) 3각 11분인데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오초 삼각 12분이고, 8월 보름⁴⁷⁾이 청나라 역서에서는 신초(申初) 초각 10분인데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신초 초각 9분으로 두 군데에서 각각 1분의 차이 납니다. 그러나 역관(曆官)에게 다시 명하여 한결같이 『역상고성(曆象考成)』⁴⁸⁾ 본법(本法)⁴⁹⁾에 의거해서 세밀하게 계산하고 조사하게 했더니, 대개 [각(刻), 분(分) 아래의] 초(秒)나 미(微)⁵⁰⁾ 단위의 남은 수를 올리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기 때문이었지⁵¹⁾ 실로 계산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기

47) 보름과 망이 정확히 같은 것인지? 보름을 보름날이고, 망은 그런그런 시점을 말하는 건 혹시 아닐지? 합삭과 초하루/그믐처럼.

48) 『역상고성(曆象考成)』: 청나라 강희제 때 편찬한 역산천문학(曆算天文學) 서적으로, 수학·천문학·음률에 관한 3부작 『율력연원(律曆淵源)』 가운데 한 편이다. 17세기에 대거 편찬된 천문역산학 서적들이 대개 예수회 선교사들에 의한 것이었던 반면, 『역상고성』은 중국의 학자들에 의해 편찬되었으며, 내용도 중국의 전통 천문학과 새로 도입된 서양 천문학을 결합시켰다고 평가된다. 18세기 이후 동아시아 역법의 준거가 된 책이다.

49) 본법(本法): 천문역산학 서적에서 같은 문제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해결 방법이 있을 때 본래의 방법을 ‘본법’이라 하고, 두 번째 이후의 방법을 흔히 ‘우법(又法)’이라 했다.

50) 초(秒), 미(微): 시간의 단위. 1시는 8각, 1각은 15분, 1분은 60초. 미(微)는 분명하지는 않으나 초(秒) 아래의 단위였을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1초=60미가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51) 이 두 가지 시각에 1분씩 차이가 난 원인을 청나라 흥선감과 조선 관상감에서 역 계산 할 때 채용하는 정밀도의 차이로 돌리고 있다. 조선의 관상감에서는 역 계산을 할 때 30초 이상의 값이 나오면 60초를 다 채우지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윤3월 15일 [역주(曆註) 중] ‘불의(不宜) 출행(出行)’이 청나라 역서에는 없는데 우리나라 역서에는 있고, 5월 15일 ‘요병(療病)’⁵²⁾이 청나라 역서에는 없는데 우리나라 역서에는 있습니다. 이것은 저 나라와 우리나라에서 [역 계산에 쓰는] 용법(用法)이 달라서 생긴 것으로, 원래 관계없습니다.

그 밖에 역주 중 14군데가 서로 같지 않은 것은 만약 저들의 기신일(忌辰日)에 해당되면 청나라 역서에서는 [그날의 역주를] 빼고 기록하지 않는 것이 본디 관례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우리나라 역서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가경 15년(1810) 12월 22일

제조 이조판서 신 박(朴)

제조 행호군 신 이(李)

윤허함.

않았더라도 올려서 1분으로 계산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한다.(『정조실록』 정조 19년 11월 30일) 아마도 관상감의 역관들은, 흠천감에서는 이보다 더 정밀하게 계산하고 있고, 그래서 때로는 그런 과정이 누적되어서 이처럼 1분이 차이나는 결과를 빚어낸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52) 요병(療病): 역서의 역주(曆註)에 쓰는 용사(用事)의 하나로, 병을 치료하는 일.

7. 1818년 (순조 18년, 嘉慶 23년, 戊寅) 12월 25일 觀象監啓目

觀象監啓目. 來己卯年清鄉書考准爲白有昆, 大小月, 二十四氣, 合朔弦望, 日出入時刻, 舉皆脗合是白乎矣.

正月初十日曆註中, 不宜出行, 清無鄉有是白乎脗, 五月十七日小暑, 清已正一刻七分, 鄉已正一刻八分, 相差爲一分. 此則彼我用法之或有不同.

而至於日出入, 清置於三十日, 鄉置於二十九日, 雖差一日是白乎乃, 此亦推步之際, 尾位秒微之或收或捨而然, 似此相差既多已例是乎脗.

其他曆註中十處不同, 皆因彼中忌辰, 例必相左. 竝從鄉書施行何如.

嘉慶二十三年十二月二十五日

提調行知中樞府事臣沈

提調行護軍臣金

관상감에서 올리는 계목.

오는 기묘년(1819) 청나라 역서와 우리나라 역서를 대조해보니, 큰 달과 작은 달, 24기, 합삭(合朔)·상하현·보름, 해 뜨는 시각·해지는 시각이 거의 모두 꼭 맞습니다.

그런데 정월 10일 역주(曆註) 중 ‘불의(不宜) 출행(出行)’이 청나라 역서에는 없는데 우리나라 역서에는 있으며, 5월 17일 소서(小暑)[에 뜨는 시각]이 청나라 역서에서는 1각 7분인데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1각 8분으로 서로 1분이 차이 납니다. 이는 저 나라와 우리나라에서 [역 계산에 쓰는] 용법(用法)이 간혹 달라서 그런 것입니다.

[같은 달에] 해 뜨는 시각·해 지는 시각을 청나라 역서에서는 30일에 두었는데,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29일에 두어서 비록 하루가 차이 나지만, 이것 역시 역 계산을 할 때 끝자리 초(秒)나 미(微) 단위[의 남은 수]를 올리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차이는 전례가 이미 많습니니다.

그 밖에 역주 중 10군데 서로 다른 것들은 모두 저들의 기신(忌辰)으로 인한 것입니다. 으레 차이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우리나라 역서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가경 23년(1818) 12월 25일

제조 행지중추부사 신 심(沈)

제조 행호군 신 김(金)

8. 1819년 (순조 19년, 嘉慶 24년, 己卯) 12월 26일 觀象監啓目

觀象監啓目. 來庚辰年清鄉書考准爲白有昆, 大小月, 二十四氣, 合朔弦望, 舉皆脗合是白遣.

曆註中十七處不同者, 皆因彼中忌辰日, 例必相差是白乎旆.

惟正月日出入時刻, 清置初六日, 鄉置初七日, 而十二月小寒時刻, 清爲亥正二刻四分, 鄉爲亥正二刻三分, 相差一分是白乎乃, 此則乘除之際, 秒微零數之或收或捨而然是白乎旆.

八月十三日, 曆註下不宜動土, 清有鄉無, 而其日既註安葬, 則又書不宜動土, 卽清書之誤也. 竝從鄉書施行何如.

嘉慶二十四年十二月二十六日 領事臣徐

提調行議政府左參贊臣林

提調行護軍臣金

관상감에서 올리는 계목.

오는 경진년(1820) 청나라 역서와 우리나라 역서를 대조해보니, 큰 달과 작은 달, 24기, 합삭(合朔)·상하현·보름이 거의 모두 꼭 맞습니다.

역주(曆註) 중 17군데 서로 다른 것들은 모두 저들의 기신일(忌辰日)로 인한 것입니다. 으레 차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정월 해 뜨는 시각·해 지는 시각을 청나라 역서에서는 6일에 두었는데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7일에 두었고, 12월 소한(小寒) 시각이 청나라 역서에서는 해정(亥正) 2각 4분 인데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해정 2각 3분으로 1분이 차이 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산할 때 [각(刻), 분(分) 아래의] 초(秒)나 미(微) 단위의 남은 수를 올리기도 하고 버리기도 해서 그런 것입니다.

8월 13일 역주 중 ‘불의(不宜) 동토(動土)’가 청나라 역서에는 있는데 우리나라 역서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 역주 중에 이미 ‘안장(安葬)’⁵³⁾이 있으니 ‘불의 동토’를 또 써넣은 것은 청나라 역서의 오류입니다.⁵⁴⁾ 모두 우리나라 역서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가정 24년(1819) 12월 26일 영사 신 서(徐)

제조 행의정부좌참찬 신 임(林)

제조 행호군 신 김(金)

53) 안장(安葬): 역서의 역주(曆註)에 쓰는 용사(用事)의 하나로, 장례 때 시신을 묻거나, 천장 때 유골을 묻는 일.

54)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역주(曆註)에 관한 규정이다. ‘안장을 해도 괜찮다(宜安葬)’는 역주를 단 날에는 ‘땅을 파는 일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不宜動土)’는 역주를 또 달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규정을 『작력식(作曆式)』에서는 ‘타거법(打去法)’이라 했다.

9. 1823년 (순조 23년, 道光 3년, 癸未) 12월 일 觀象監啓目 55)

觀象監啓目. 來甲申年清鄉書考准爲白有昆, 大小月, 二十四氣, 日出入時刻, 舉皆脗合是白乎矣.

惟正月, 上弦, 鄉書巳正三刻三分, 清書巳正三刻四分, 望, 鄉書寅初初刻十三分, 清書寅初初刻十四分, 二月, 下弦, 鄉書戌初初刻八分, 清書戌初初刻十分, 三月, 合朔, 鄉書亥正三刻十三分, 清書夜子初初刻, 望, 鄉書夜子初二刻五分, 清書夜子初二刻六分, 下弦, 鄉書未正初刻九分, 清書未正初刻八分, 四月, 合朔, 鄉書午正一刻一分, 清書午正一刻二分, 望, 鄉書巳正一刻十四分, 清書巳正二刻, 下弦, 鄉書辰正二刻一分, 清書辰正二刻二分, 六月, 下弦, 鄉書申初三刻一分, 清書申初三刻二分, 七月, 上弦, 鄉書卯初二刻十四分, 清書卯初三刻, 望, 鄉書寅初一刻五分, 清書寅初一刻六分, 下弦, 鄉書寅正一刻四分, 清書寅正一刻五分, 閏七月, 合朔, 鄉書亥正一刻四分, 清書亥正一刻三分, 望, 鄉書戌初一刻八分, 清書戌初一刻十分, 八月, 合朔, 鄉書卯正一刻六分, 清書卯正一刻七分, 上弦, 鄉書辰初一刻十一分, 清書辰初一刻十二分, 望, 鄉書午初二刻十一分, 清書午初二刻十分, 九月, 上弦, 鄉書丑初三刻十二分, 清書丑初三刻十一分, 望, 鄉書寅初二刻一分, 清書寅⁵⁶⁾二刻, 十月, 上弦, 鄉書亥正三刻, 清書亥正三刻二分, 十一月, 合朔, 鄉書酉正二刻六分, 清書酉正二刻五分, 上弦, 鄉書戌正初刻五分, 清書戌正初刻六分, 望, 鄉書辰初一刻十三分, 清書辰初一刻十四分, 十二月, 上弦, 鄉書申正初刻九分, 清書申正初刻八分, 下弦, 鄉書巳初三刻十四分, 清書巳正初刻, 有此一二分相左是白乎矣, 更令諸曆官, 精細推步, 則法理昭然, 終不見差誤之端是乎旃.

55) 이 계목의 작성 연도는 계목을 올리는 날짜를 적은 마지막 부분이 남아 있지 않아서 직접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간접적인 증거들을 통해 상당한 정도로 분명하게 추정할 수는 있다. 먼저 서두의 “오는 갑신년”이라는 구절을 통해 이 계목이 계미(癸未)년에 작성·제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계목 등록의 수록 기간 안에 계미년은 순조 23년(1823) 아니면 고종 20년(1883)이다.

다음으로 필체를 보면, 정조 14년(1790)~순조 9년(1819) 시기의 계목들에서 보이는 특유의 필체가 철종 14년(1863) 이후의 계목들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이 계목은 앞 시기의 필체와 매우 유사해 보인다.

좀 더 분명한 증거는 청나라를 가리키는 표현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정조 14년(1790)~고종 14년(1877) 시기의 계목들에서는 청나라를 가리킬 때 ‘저들’이라는 의미의 “피중(彼中)” 또는 “피(彼)”라는 표현을 썼는데, 고종 23년(1886)과 24년(1887) 계목에서는 “청(淸)”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고, 그 앞의 한 칸을 띄우기까지 했다. 이런 두드러진 변화는 아마도 1880년대 들어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지던 상황이 반영된 결과였을 것이다. 만약 이 계목이 고종 20년(1883)의 것이라면 여기에도 이런 달라진 표현들이 쓰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계목은 이런 측면에서 이전 시기의 특징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계목은 고종 20년(1883)의 것일 가능성보다는 순조 23년(1823)의 것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된다. 여기서는 이런 추정에 따라 번역했다.

56) ‘寅’ 뒤에 ‘初’자가 누락되었음.

十二月十一日己巳下，不宜出行，清有鄉無，其日既註進人口，則去不宜出行，乃是曆式之當然是乎所，清書之有此錯誤，實所難究是乎於，
曆註中十九處相左，皆因彼中忌辰，自是例也。竝從鄉書施行何如。

관상감에서 올리는 계목.

오는 갑신년(1824) 청나라 역서와 우리나라 역서를 대조해보니, 큰 달과 작은 달, 24기, 해 뜨는 시각·해지는 시각이 거의 다 꼭 맞습니다.

다만 정월 상현(上弦)이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사정(巳正) 3각 3분인데 청나라 역서에서는 사정 3각 4분이고, 보름이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인초(寅初) 초각 13분인데 청나라 역서에서는 인초 초각 14분입니다. 2월 하현(下弦)이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술초(戌初) 초각 8분인데 청나라 역서에서는 술초 초각 10분입니다.

3월 합삭(合朔)이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해정(亥正) 3각 13분인데 청나라 역서에서는 야자(夜子)인 자초(子初) 초각이고, 보름이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야자인 자초 2각 5분인데 청나라 역서에서는 야자인 자초 2각 6분이며, 하현이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미정(未正) 초각 9분인데 청나라 역서에서는 미정 초각 8분입니다. 4월 합삭이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오정(午正) 1각 1분인데 청나라 역서에서는 오정 1각 2분이고, 보름이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사정(巳正) 1각 14분인데 청나라 역서에서는 사정 2각이며, 하현이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진정(辰正) 2각 1분인데 청나라 역서에서는 진정 2각 2분입니다.

6월 하현이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신초(申初) 3각 1분인데 청나라 역서에서는 신초 3각 2분입니다. 7월 상현이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묘초(卯初) 2각 14분인데 청나라 역서에서는 묘초 3각이고, 보름이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인초 1각 5분인데 청나라 역서에서는 인초 1각 6분이며, 하현이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인정(寅正) 1각 4분인데 청나라 역서에서는 인정 1각 5분입니다.

윤7월 합삭이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해정 1각 4분인데 청나라 역서에서는 해정 1각 3분이고, 보름이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술초 1각 8분인데 청나라 역서에서는 술초 1각 10분입니다. 8월 합삭이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묘정(卯正) 1각 6분인데 청나라 역서에서는 묘정 1각 7분이고, 상현이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진초(辰初) 1각 11분인데 청나라 역서에서는 진초 1각 12분이며, 보름이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오초 2각 11분인데 청나라 역서에서는 오초 2각 10분입니다.

9월 상현이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축초(丑初) 3각 12분인데 청나라 역서에서는 축초 3각 11분이고, 보름이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인초 2각 1분인데 청나라 역서에서는 인(寅) 2각입니다. 10월 상현이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해정 3각인데 청나라 역서에서는 해정 3각 2분입니다.

11월 합삭이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유정(酉正) 2각 6분인데 청나라 역서에서는 유정 2각 5분이고, 상현이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술정(戌正) 초각 5분인데 청나라 역서에서는 술정 초각 6분이며, 보름이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진초 1각 13분인데 청나라 역서에서는 진초 1각 14분입니다. 12월 상현이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신정(申正) 초각 9분인데 청나라 역서에서는 신정 초각 8분이고, 하현이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사초(巳初) 3각 14분인데 청나라 역서에서는 사정 초각입니다.

이런 1~2분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역관들에게 다시 명하여 정밀하게 계

산하도록 한 결과, 역 계산 방법과 이치에 밝은 데도 차오(差誤)를 낳은 실마리를 끝내 찾지 못하였습니다.

12월 11일 기사(己巳) 아래의 ‘불의출행(不宜出行)’이 청나라 역서에는 있는데 우리나라 역서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미 ‘진인구(進人口)’라는 역주(曆註)를 달았으니 ‘불의출행’은 없애는 것이 역식(曆式)의 마땅함이온 바, 청나라 역서에 이런 착오가 있는 까닭은 실로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역주 중 19군데 차이 나는 것은 모두 저들의 기신(忌辰)으로 인한 것입니다. [청나라 역서에서는 저들의 기신일에 역주를 달지 않는 것이] 본디 규례입니다. 모두 우리나라 역서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10. 1857년 (철종 8년, 咸豐 7년, 丁巳) 12월 □일 觀象監啓目 57)

觀象監啓目. 來戊午年清鄉書考准爲白有昆, 合朔弦望, 二十四氣, 日出入時刻, 舉皆相合是白遣.

惟正月中氣雨水, 清書爲申正一刻十三分, 而鄉書爲申正一刻十二分, 五月中氣夏至, 清書爲未正三刻九分, 而鄉書爲未正三刻八分, 兩處相左一分是白乎乃, 皆因推步之際尾位秒微零數之或收或否, 而實非乘除比例之做錯是白乎旆,

其他曆註諸處之相左段, 多因彼中宜忌 勢所固然 竝從鄉書施行何如.

관상감에서 올리는 계목.

오는 무오년(1858) 청나라 역서와 우리나라 역서를 대조해보니, 합삭(合朔)·상하현·보름, 24기, 해 뜨는 시각·해지는 시각이 거의 모두 서로 맞습니다.

다만 정월 중기(中氣)인 우수(雨水)가 청나라 역서에서는 신정(申正) 1각 13분인데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신정 1각 12분이고, 5월 중기인 하지(夏至)가 청나라 역서에서는 미정(未正) 3각 9분인데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미정 3각 8분으로 두 군데에서 1분이 차이 납니다. 그러나 모두 계산 과정에서 끝자리 초(秒)나 미(微) 단위의 남은 수를 올리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기 때문이었지 실로 계산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 밖에 역주 여러 곳의 차이는 저 나라와 우리나라의 의기(宜忌) [즉 기신일]이 달라서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 우리나라 역서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57) 이 계목은 본문까지만 남아 있어서 본문의 ‘오는 무오년’만 가지고는 제출 연도를 확정할 수 없다. 그러나 순조 23년(1823)까지의 계목들에서 보이는 ‘기신일(忌辰日)’이라는 용어 대신, 철종 14년(1863) 이후의 계목들에서 쓰인 ‘의기(宜忌)’라는 표현을 쓴 것을 하나의 근거로, 여기서는 정조 21년(1797)이 아니라 철종 8년(1857)으로 연도를 잠정적으로 정해둔다.

11. 1863년 (철종 14년, 同治 2년, 癸亥) 12월 26일 觀象監啓目

觀象監啓目. 來甲子年清鄉書考准爲白有昆, 大小月, 合朔弦望, 日出入時刻, 舉皆脗合是白乎矣.

惟二十四氣中雨水, 鄉書則申正三刻十分, 清書則申正三刻十一分, 大暑, 鄉書則子正三刻五分, 清書則子正三刻六分, 處暑, 鄉書則辰初二刻八分, 清⁵⁸⁾書則辰初二刻九分, 小雪, 鄉書則巳初二刻九分, 清書則巳初二刻十分, 冬至, 鄉書則亥正初刻七分, 清書則亥正初刻八分, 相左爲一分, 故更令諸曆官, 詳細推步, 則皆因微秒之或收或捨, 亦多已例是白乎□.

□□⁵⁹⁾中八處相左, 乃因彼我宜忌之不同. 竝從鄉書施行何如.

同治二年十二月二十六日 領事臣金

提調兼知中樞府事臣金

提調禮曹判書臣金

관상감에서 올리는 계목.

오는 갑자년(1864) 청나라 역서와 우리나라 역서를 대조해보니, 큰 달과 작은 달, 합삭(合朔)·상하현·보름, 해 뜨는 시각·해지는 시각이 거의 모두 꼭 맞습니다.

다만 24기(氣) 중 우수(雨水)가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신정(申正) 3각 10분인데 청나라 역서에서는 신정 3각 11분이고, 대서(大暑)가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자정(子正) 3각 5분인데 청나라 역서에서는 자정 3각 6분이고, 처서(處暑)가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진초(辰初) 2각 8분인데 청나라 역서에서는 진초 2각 9분이고, 소설(小雪)이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사초(巳初) 2각 9분인데 청나라 역서에서는 사초 2각 10분이고, 동지(冬至)가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해정(亥正) 초각 7분인데 청나라 역서에서는 해정 초각 8분으로 서로 1분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 역관들에게 다시 명하여 상세하게 계산하도록 했더니, 모두 미(微)·초(秒) [단위의 남은 수]를 올리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데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역시 전례가 많이 있습니다.

역주(曆註) 중 8군데 차이 나는 것은 단지 저 나라와 우리나라의 의기(宜忌) [즉 기신일]이 달라서 생긴 것입니다.⁶⁰⁾ 모두 우리나라 역서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동치 2년(1863) 12월 26일 영사 신 김(金)

58) 문서가 현재 여기 즈음에서 오래져서 좌우로 나뉘어 서로 떨어져 있지만, 서두의 연도 간지와 끝 부분의 연도가 서로 부합하고, 양쪽으로 나뉜 줄의 글자들도 서로 꼭 맞는다.

59) 문서 보존 상태 때문에 읽을 수 없는 글자들이지만, 문맥상 ‘脉 曆註’일 것으로 보임. 번역은 이 추정에 따라서 했음.

60) 여기서 ‘宜忌가 다르다’는 말은 ‘역주 중의 宜와 忌가 다르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만약 그런 의미라면 이 문장 전체가 동어반복이 되어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게 된다.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로 양국의 ‘忌辰日이 다르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은 다른 여러 계목들에서는 역주가 차이 나는 이유가 양국의 ‘기신일이 다르다’기 때문이라고, 더 직접적인 표현을 써서 말했다.

제조 겸지중추부사 신 김(金)

제조 예조판서 신 김(金)

12. 1864년 (고종 1년, 同治 3년, 甲子) 12월 26일 觀象監啓目

觀象監啓目. 來乙丑年清鄉書考准爲白有昆, 大小月, 二十四氣, 合朔弦望, 日出入時刻, 舉皆脗合是白乎矣.

惟小滿時刻, 鄉書則午初初刻, 清書則午初初刻一分, 相左爲一分是白如乎, 更令諸曆官, 詳細推步, 則因微秒之或收或捨, 亦多已例是白乎旆.

曆註中二十處相左, 乃因彼我宜忌之不同. 竝從鄉書施行何如.

同治三年十二月二十六日 領事臣金

提調上護軍臣鄭

提調護軍臣金

관상감에서 올리는 계목.

오는 을축년(1865) 청나라 역서와 우리나라 역서를 대조해보니, 큰 달과 작은 달, 합삭(合朔)·상하현·보름, 해 뜨는 시각·해지는 시각이 거의 모두 꼭 맞습니다.

다만 소만(小滿) 시각이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오초(午初) 초각인데 청나라 역서에서는 오초 초각 1분으로 1분이 차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 역관들에게 다시 명하여 상세하게 계산하도록 했더니, 미(微)나 초(秒) 단위의 남은 수를 올리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데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역시 전례가 많이 있습니다.

역주(曆註) 중 20군데 차이 나는 것은 단지 저 나라와 우리나라의 의기(宜忌) [즉 기신일]이 달라서 생긴 것입니다. 모두 우리나라 역서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동치 3년(1864) 12월 26일 영사 신 김

제조 상호군 신 정(鄭)

제조 호군 신 김(金)

13. 1865년 (고종 2년, 同治 4년, 乙丑) 12월 26일 觀象監啓目

觀象監啓目. 來丙寅年清鄉書考准爲白有昆, 大小月, 合朔弦望, 日出入時刻, 舉皆脗合是白乎矣.

惟九月段目之土王, 十月節氣之立冬, 乃有一日之相左是如乎, 我國, 則節氣時刻, 例加四十二分, 故如當子時初正交換時刻, 則差以一日, 而今此相左, 亦皆因此而然是白遣.

曆註中二處之相左, 式由彼我宜忌之致. 竝從鄉書施行何如.⁶¹⁾

62)

同治四年十二月二十六日 領事_臣趙

提調南綾君_臣洪

提調行護軍_臣金

관상감에서 올리는 계목.

오는 병인년(1866) 청나라 역서와 우리나라 역서를 대조해보니, 큰 달과 작은 달, 합삭(合朔)·상하현·보름, 해 뜨는 시각·해지는 시각이 거의 모두 꼭 맞습니다.

다만 9월 단목(段目)의 토왕(土王)과 10월 절기의 입동(立冬)은 하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절기 시각은 청나라 북경의 절기 시각에 42분을 더합니다. 그런 까닭에 만약 절기 시각이 자시(子時)의 초시(初時)와 정시(正時)가 서로 바뀌는 때에 있게 되면 하루가 차이 납니다. 지금 이 두 군데의 차이도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역주 중 두 군데가 차이 나는 것은 저 나라와 우리나라의 의기(宜忌) [즉 기신일의 차이]로 인한 것입니다.⁶³⁾ 모두 우리나라 역서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동치 4년(1865) 12월 26일 영사 신 조(趙)

제조 남릉군 신 홍(洪)

제조 행호군 신 김(金)

61) 맨 끝의 ‘行何如’ 세 글자는 문서에서 잘려 나가서 없으나, 투석어이므로 문맥을 고려해서 보충해 넣었음.

62) 이 문서는 현재 이 부분에서 잘려서 두세 조각으로 나뉘어 있다. 그 중 앞과 뒤의 두 개의 큰 조각이 남아 있는데, 앞조각에는 “오는 병인년”, 뒷조각에는 “동치 4년 12월”이라는 연대 기록이 남아 있다. 본 자료의 수록 기간 중 병인년은 가경 10년(1805) 아니면 동치 4년(1865)이다. 그 중 입동이 10월에 있고, 입동 시각이 자정 즈음에 있는 해는 동치 5년(1866)이다. 또 가경 10년(1805)의 계목은 따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이 두 조각이 같은 동치 4년(1865) 계목의 앞부분과 뒷부분임은 분명하다.

63) 이 문장에서 ‘式’자의 의미를 알 수 없어 번역하지 않았음. ‘모두’ 또는 ‘단지’ 정도의 의미일 것 같으나 분명하지 않음.

14. 1866년 (고종 3년, 同治 5年, 丙寅) 12월 20일 觀象監啓目

觀象監啓目. 來丁卯年清鄉書考准爲白有昆, 大小月, 二十四氣, 合朔弦望, 日出入時刻, 舉皆脗合是白乎矣.

惟曆註中十四處相左, 皆因彼我宜忌之不同. 竝從鄉書施行何如.

同治五年十二月二十日

提調行護軍臣李

提調行護軍臣南

관상감에서 올리는 계목.

오는 정묘년(1867) 청나라 역서와 우리나라 역서를 대조해보니, 큰 달과 작은 달, 24기, 합삭(合朔)·상하현·보름, 해 뜨는 시각·해지는 시각이 거의 모두 꼭 맞습니다.

다만 역주 중 14군데 차이 나는 것은 모두 저 나라와 우리나라의 의기(宜忌) [즉 기신 일]이 달라서 생긴 것입니다. 모두 우리나라 역서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동치 5년(1866) 12월 20일

제조 행호군 신 이(李)

제조 행호군 신 남(南)

15. 1867년 (고종 4년, 同治 6년, 丁卯) 12월 27일 觀象監啓目

觀象監啓目. 來戊辰年清鄉書考准爲白有昆, 大小月, 合朔弦望, 二十四氣, 一一脗合.

而三月二十一日, 日出入時刻, 清置於二十二日, 相左爲一日是白乎矣, 日出入, 因值□⁶⁴度, 每多進退之例是白乎旆.

曆註中十一處不同者, 若值彼中忌辰, 則闕而不書, 自是例規是白遣.

四月初二日下, 不宜出行, 清有鄉無, 十五日下, 不宜出行, 清無鄉有, 二十日下, 嫁娶, 清無鄉有, 九月二十日下, 牧養, 清無鄉有, 十二月二十九日下, 不宜出行, 清有鄉無是白乎乃, 此等相左, 元非關係, 自前竝從鄉書, 今亦依此施行何如.

同治六年十二月二十七日 領事臣金

提調上護軍臣南

提調大護軍臣洪

관상감에서 올리는 계목.

오는 무진년(1868) 청나라 역서와 우리나라 역서를 대조해보니, 큰 달과 작은 달, 합삭(合朔)·상하현·보름, 24기가 하나하나 꼭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3월 21일[에 둔] 해 뜨는 시각·해 지는 시각을 청나라 역서에서는 22일에 두어서 서로 하루가 차이 납니다. 그러나 해 뜨는 시각·해 지는 시각[을 기입하는 날짜]는 □⁶⁵를 만나면 당기거나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주(曆註) 중 11군데 차이 나는 것은 만약 저들의 기신일(忌辰日)에 해당되면 [청나라 역서에서는 그날의 역주를] 빼고 기록하지 않는 것이 본디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4월 2일 아래의 ‘불의(不宜) 출행(出行)’이 청나라 역서에는 있는데 우리나라 역서에는 없고, 15일 아래의 ‘불의 출행’이 청나라 역서에는 없는데 우리나라 역서에는 있으며, 29일 아래의 ‘가취(嫁娶)’⁶⁶가 청나라 역서에는 없는데 우리나라 역서에는 있습니다. 9월 20일 아래의 ‘목양(牧養)’이 청나라 역서에는 없는데 우리나라 역서에는 있고, 12월 29일 아래의 ‘불의 출행’이 청나라 역서에는 있는데 우리나라 역서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차이들은 원래 관계없습니다. 전부터 모두 우리나라 역서를 따라왔습니다. 이번에도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동치 6년(1867) 12월 27일 영사 신 김(金)

제조 상호군 신 남(南)

64) ‘雙’자인 것으로 보이나 분명하지 않다.

65) ‘雙度’로 보이나, 그 의미를 알 수 없다.

66) 가취(嫁娶): 역서의 역주(曆註)에 쓰는 용사(用事)의 하나로, 혼례를 올리는 일.

제조 대호군 신 홍(洪)

16. 1869년 (고종 6년, 同治 8년, 己巳) 12월 20일 觀象監啓目

觀象監啓目. 來庚午年清鄉書考准爲白有昆, 大小月, 合朔弦望, 二十四氣, 日出入時刻, 一一脗合是白乎矣.

五月夏至, 九月霜降, 乃有一日之相左是如乎, 我國節氣時刻, 較北京每加四十二分, 若當子時, 則子正前後, 分爲夜子晝子, 而各屬於前後日, 故遂爲一日之差. 今此相左, 亦因此而然是白遣.

曆註中, 年神下, 乙庚, 鄉書書以庚乙, 九月初六日下, 上官, 清有鄉無, 十六日下, 嫁娶時刻, 清有鄉無, 十月十三日下, 納財畋獵, 鄉書書以畋獵納財是白乎乃, 此等相左, 元無關係, 自前竝從鄉書, 今亦依此施行何如.

同治八年十二月二十日 領事臣金

提調行上護軍臣鄭

提調行大護軍臣朴

관상감에서 올리는 계목.

오는 경오년(1870) 청나라 역서와 우리나라 역서를 대조해보니, 큰 달과 작은 달, 합삭(合朔)·상하현·보름, 24기, 해 뜨는 시각·해지는 시각이 하나하나 꼭 맞습니다.

그런데 5월 하지(夏至)와 9월 상강(霜降) 날짜에는 하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절기 시각은 북경의 절기 시각에 언제나 42분을 더해주는데, 만약 절기 시각이 자시(子時)에 있으면 자시의 자정(子正) 전과 자정 후가 나뉘어 야자시(夜子時)와 주자시(晝子時)⁶⁷⁾가 되어 각각 전날과 뒷날에 속하게 되니, 결국 하루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이 차이 역시 그런 이유 때문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역주(曆註) 중 연신(年神) 아래의 ‘을경(乙庚)’을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경을(庚乙)’이라고 썼습니다. 9월 6일 아래의 ‘상관(上官)’이 청나라 역서에는 있는데 우리나라 역서에는 없고, 16일 아래의 ‘가취(嫁娶)’ 시각이 청나라 역서에는 있는데 우리나라 역서에는 없습니다. 10월 13일 아래의 ‘납재·전렵(納財畋獵)⁶⁸⁾’을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전렵·납재’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이런 차이는 원래 관계없습니다. 전부터 모두 우리나라 역서를 따라왔습니다. 이번에도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동치 8년(1869) 12월 20일 영사 신 김(金)

제조 행상호군 신 정(鄭)

제조 행대호군 신 박(朴)

67) 야자시(夜子時)와 주자시(晝子時): 야자시는 자정 초시(初時), 주자시는 자정 정시(正時)다. 지금의 시각 제도로는 야자시는 전날 오후 11시부터 12시까지, 주자시는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1시까지에 해당한다.

68) 전렵(畋獵): 역서의 역주(曆註)에 쓰는 용사(用事)의 하나로, 사냥하는 일.

17. 1870년 (고종 7년, 同治 9년, 庚午) 12월 20일 觀象監啓目

觀象監啓目. 來辛未年清鄉書考准爲白有昆, 大小月, 合朔弦望, 日出入時刻, 一一脗合是白乎矣.

節氣中五月小暑, 七月處暑, 乃有一日之相左是如乎, 我國節氣時刻, 較北京每加四十二分, 若當子時, 則子正前後, 分爲夜子晝子, 而各屬於前後日,⁶⁹⁾ 故遂爲一日之差. 今此相左, 亦因此而然是白乎歟.

十二月大寒, □□□□□□⁷⁰⁾刻九分 鄉書則丑初初刻十分 相左爲一分是白如乎, 更令諸曆官, 詳細推□, □⁷¹⁾因微秒之或收或捨, 亦多已例是白遣.

曆註中二十四處相左, 乃因彼我宜忌之不同. 竝從鄉書施行何如.

同治九年十二月二十日 領事臣金

提調行上護軍臣鄭

提調行大護軍臣朴

관상감에서 올리는 계목.

오는 경오년(1870) 청나라 역서와 우리나라 역서를 대조해보니, 큰 달과 작은 달, 합삭(合朔)·상하현·보름, 해 뜨는 시각·해지는 시각이 하나하나 꼭 맞습니다.

그런데 절기 중 5월 소서(小暑)와 7월 처서(處暑) 날짜에는 하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절기 시각은 북경의 절기 시각에 언제나 42분을 더해주는데, 만약 절기 시각이 자시(子時)에 있으면 자시의 자정(子正) 전과 자정 후가 나뉘어 야자시(夜子時)와 주자시(晝子時)가 되어 각각 전날과 뒷날에 속하게 되니, 결국 하루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이 차이 역시 그런 이유 때문에 있게 된 것입니다.

12월 대한(大寒)이 청나라 역서에서는 축초(丑初) 초각 9분인데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축초 초각 10분으로 1분이 차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 역관들에게 다시 명하여 상세하게 계산하도록 했더니, 미(微)나 초(秒) 단위[의 남은 수]를 올리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데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역시 전례가 많이 있습니다.

역주(曆註) 중 24군데 차이 나는 것은 단지 저 나라와 우리나라의 의기(宜忌) [즉 기신일]이 달라서 생긴 것입니다. 모두 우리나라 역서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동치 9년(1870) 12월 20일 영사 신 김(金)

제조 행상호군 신 정(鄭)

69) 문서가 현재 여기 즈음에서 오래져서 좌우로 나뉘어 서로 떨어져 있지만, 서두의 연도 간지와 끝 부분의 연도가 서로 부합하고, 양쪽으로 나뉜 줄의 글자들도 서로 꼭 맞는다.

70) 문서 보존 상태 때문에 읽을 수 없는 글자들이지만, 문맥상 ‘淸書則丑初初’임이 분명해 보임. 번역은 이 추정 에 따라 했음.

71) 문서 보존 상태 때문에 읽을 수 없는 글자들이지만, 문맥상 ‘步, 則’일 것으로 보임. 번역은 이 추정에 따라 서 했음.

제조 행대호군 신 박(朴)

18. 1871년 (고종 8년, 同治 10년, 辛未) 12월 20일 觀象監啓目

觀象監啓目. 來壬申年清鄉書考准爲白有昆, 大小月, 二十四氣, 合朔弦望, 日出入時刻, 舉皆脗合是白乎矣.

惟曆註中二十二處相左, 皆因彼我宜忌之不同. 竝從鄉書施行何如.

同治十年十二月二十日 領事_臣金

提調大提學_臣朴

관상감에서 올리는 계목.

오는 임신년(1872) 청나라 역서와 우리나라 역서를 대조해보니, 큰 달과 작은 달, 24기, 합삭(合朔)·상하현·보름, 해 뜨는 시각·해지는 시각이 거의 모두 꼭 맞습니다.

다만 역주(曆註) 중 22군데 차이 나는 것은 모두 저 나라와 우리나라의 의기(宜忌) [즉 기신일]이 달라서 생긴 것입니다. 모두 우리나라 역서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동치 10년(1871) 12월 20일 영사 신 김(金)

제조 대제학 신 박(朴)

19. 1876년 (고종 13년, 光緒 2년, 丙子) 12월 27일 觀象監啓目

觀象監啓目. 來丁丑年清鄉書考准爲白有昆, 大小月, 合朔弦望, 二十四氣, 日出入時刻, 一一脗合爲白矣.

節氣中四月亡種, 乃有一日之相左是如乎, 我國節氣時刻, 較北京每加四十二分, 若當子時, 則初正分爲晝夜, 各屬於前後日, 故遂爲一日之差. 同日之日出入, 隨以爲差.

五月十一日下, 不宜出行, 清無鄉有, 亦因亡種相左而然是白遣.

其他曆註中二十一處相左, 乃因彼我宜忌之不同. 竝從鄉書施行何如.

光緒二年十二月二十七日 領事_臣李

提調行大護軍_臣金

提調宗正卿_臣李

관상감에서 올리는 계목.

오는 정축년(1877) 청나라 역서와 우리나라 역서를 대조해보니, 큰 달과 작은 달, 합삭(合朔)·상하현·보름, 24기, 해 뜨는 시각·해지는 시각이 하나하나 꼭 맞습니다.

그런데 4월 망종(亡種) 날짜에는 하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절기 시각은 북경의 절기 시각에 언제나 42분을 더해주는데, 만약 절기 시각이 자시(子時)에 있으면 초시(初時)와 정시(正時)가 나뉘어 야자시(夜子時)와 주자시(晝子時)가 되어 각각 전날과 뒷날에 속하게 되니, 결국 하루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망종과 같은 날인 해 뜨는 시각·해지는 시각을 기입하는 날에도 그에 따라 하루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5월 11일 아래의 ‘불의출행(不宜出行)’이 청나라 역서에는 있는데 우리나라 역서에는 없는 것 역시 망종 [날짜]가 서로 다른 데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밖에 역주(曆註) 중 21군데 차이 나는 것은 단지 저 나라와 우리나라의 의기(宜忌) [즉 기신일]이 달라서 생긴 것입니다. 모두 우리나라 역서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광서 2년(1876) 12월 27일 영사 신 이(李)

제조 행대호군 신 김(金)

제조 종정경 신 이(李)

20. 1877년 (고종 14년, 光緒 3年, 丁丑) 12월 일 觀象監啓目

觀象監啓目. 來戊寅年清鄉曆考准爲白有昆, 大小月, 二十四氣, 朔弦望, 日出入時刻, 舉皆脗合是白乎矣.

惟秋社, 淸書則置於九月初二日, 鄉書則置於八月二□□⁷²⁾日, 大抵置社之法, 例於春秋兩仲朔, 而今淸書之用第六戊者, 取其春秋分後近戊, 則用法或有變通而然.

曆註中十五處相左, 皆因彼我宜忌之不同. 竝從鄉書施行何如.

光緒三年十二月 日 領事臣李

提調大護軍臣金

관상감에서 올리는 계목.

오는 무인년(1878) 청나라 역서와 우리나라 역서를 대조해보니, 큰 달과 작은 달, 24기, 삭(朔)·상하현·보름, 해 뜨는 시각·해지는 시각이 거의 다 꼭 맞습니다.

다만 가을 사일(社日)을 청나라 역서에서는 9월 2일에 두었는데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8월 21일에 두었습니다. 무릇 사일을 두는 법[에 따르면] 으레 봄 가을 각각의 가운데 달에 [두게 되는데], 지금 청나라 역서에서 여섯 번째 무일(戊日)을 취한 것은 어쩌면 용법(用法)에 변통(變通)이 있어서 그런 것일지 모릅니다.⁷³⁾

역주(曆註) 중 15군데 차이 나는 것은 모두 저 나라와 우리나라의 의기(宜忌) [즉 기신일]이 달라서 생긴 것입니다. 모두 우리나라 역서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광서 3년(1877) 12월 일 영사 신 이(李)

제조 대호군 신 김(金)

72) 이 두 글자는 문서 보존 상태 때문에 읽을 수 없으나, 문맥상 첫 글자는 ‘十’이고, 『만세력』 해당 부분과 대조해보면 두 번째 글자는 ‘一’임. 번역은 이에 따랐음.

73) 조선 후기의 <작력식(作曆式)>류 문헌들에서는 가을 사일(秋社)을 두는 법을 두 가지 제시한다. 하나는 입추(立秋) 후 다섯 번째 무일(戊日)을 추사(秋社)로 정하는 방법이다. 이때 추사는 8월에 있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추분(秋分) 전후로 가장 가까운 무일을 추사로 정하는 방법이다. 앞의 정조 15년(1791) 계목을 보면 그해 역서 제작에서는 두 번째 방법을 썼던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고종 15년(1878) 역서를 위해서는 첫 번째 방법을 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두 번째 방법을 쓸 경우 추사가 8월이 아닌 9월에 있게 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런데 이 해에 청나라 함천감에서는 그런 점을 무시하고 두 번째 방법을 썼다. 사일을 두는 법은 두 가지였고, 그 둘은 때로는 이처럼 상충할 수 있었다. 그런 점이 조선 후기 내내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켰던 것으로 보인다.

21. 1879년 (고종 16년, 光緒 7년, 己卯) 12월 일 觀象監啓目

觀象監啓目. 來庚辰年清鄉曆考准爲白有昆, 大小月, 二十四氣, 朔弦望,
日□□□□. □□⁷⁴⁾脗合是白乎矣.

惟曆註中十八處相左, 皆因彼我宜忌之不同. 竝□□□□□⁷⁵⁾何如.

光緒五年十二月 日 領事臣李

提調知 ⁷⁶⁾

提調大護軍臣 ⁷⁷⁾

관상감에서 올리는 계목.

오는 경진년(1880) 청나라 역서와 우리나라 역서를 대조해보니, 큰 달과 작은 달, 24기, 삭(朔)·상하현·보름, 해 뜨는 시각·해지는 시각이 거의 다 꼭 맞습니다.

다만 역주(曆註) 중 18군데 차이 나는 것은 모두 저 나라와 우리나라의 의기(宜忌) [즉 기신일]이 달라서 생긴 것입니다. 모두 우리나라 역서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광서 5년(1879) 12월 일 영사 신 이(李)

제조 지

제조 대호군 신

74) 문서 보존 상태 때문에 읽을 수 없는 글자들이지만, 문맥상 앞부분은 ‘出入時刻’일 것이 분명하고, 뒷부분은 ‘舉皆’ 정도일 것으로 보임. 번역은 이 추정에 따라서 했음.

75) 문서 보존 상태 때문에 읽을 수 없는 글자들이지만, 문맥상 ‘從鄉書施行’일 것이 분명함. 번역은 이 추정에 따라서 했음.

76) 문서 보존 상태 때문에 제조의 관직명과 성(姓)은 읽을 수 없음.

77) 문서 보존 상태 때문에 제조의 성(姓)은 읽을 수 없음.

22. 1886년 (고종 23년, 光緒 12년, 丙戌) 12월 일 觀象監啓目

觀象監啓目. 來丁亥年清鄉書考准爲白有昆, 大小月, 二十四氣, 朔弦望, 日出入時刻, 舉皆脗合是白乎矣.

惟三月初一日, 合朔時刻, 一分之相左, 因微秒之或收或捨是白遣.

節氣中, 八月寒露, 清置二十二日, 鄉置二十三日, 乃有一日之相左是如乎, 我國節氣時刻, 較北京每加四十二分, 若當子時, 則初正分爲晝夜, 各屬前後日, 故遂爲一日之差是白遣.

十一月中, 十二日, 不宜出行, 二十二日, 不宜裁種, 清有鄉無, 更令諸曆官, 詳細叩籌, 則實非推步之誤是白遣.

曆註中二十三處相左, 乃因清鄉宜忌之不同. 竝從鄉書施行何如.

光緒十二年十二月 日 領事_臣沈

提調判敦寧_臣徐

提調禮曹判書_臣閔

관상감에서 올리는 계목.

오는 정해년(1887) 청나라 역서와 우리나라 역서를 대조해보니, 큰 달과 작은 달, 24기, 삭(朔)·상하현·보름, 해 뜨는 시각·해지는 시각이 거의 다 꼭 맞습니다.

다만 3월 1일 합삭(合朔) 시각이 1분 차이 나는데, 이것은 미(微)·초(秒) [단위의 남은 수]를 올리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데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절기 중 8월 한로(寒露)를 청나라 역서에서는 22일에 두었는데 우리날 역서에서는 23일에 두어서 하루가 차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절기 시각은 북경의 절기 시각에 언제나 42분을 더해주는데, 만약 절기 시각이 자시(子時)에 있으면 초시(初時)와 정시(正時)가 나뉘어 야자시(夜子時)와 주자시(晝子時)가 되어 각각 전날과 뒷날에 속하게 되니, 결국 하루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11월 중 12일의 ‘불의(不宜) 출행(出行)’과 22일의 ‘불의(不宜) 재종(裁種)’이 청나라 역서에는 있는데 우리나라 역서에는 없습니다. 여러 역관들에게 다시 명하여 상세하게 계산하도록 했더니, 실로 계산을 잘못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역주(曆註) 중 23군데 차이 나는 것은 단지 청나라와 우리나라의 의기(宜忌) [즉 기신일]이 달라서 생긴 것입니다. 모두 우리나라 역서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광서 12년(1886) 12월 일 영사 신 심(沈)

제조 판돈령 신 서(徐)

제조 예조판서 신 민(閔)

23. 1887년 (고종 24년, 光緒 13년, 丁亥) 12월 20일 觀象監啓目

觀象監啓目. 來戊子年清鄉書考准爲白有昆, 大小月, 二十四氣, 朔弦望, 日出入時刻, 舉皆脗合是白乎矣.

惟正月十六日, 曆註中, 不宜裁種, 清有鄉無, 十一月二十八日, 曆註中, 不宜裁種, 清有鄉無, 更令諸曆官, 詳細叩籌, 則實非推步之誤是白遣.

三月穀雨, 清置初九日, 鄉置初十日, 四月小滿, 清置初十日, 鄉置十一日, 八月秋分, 清置十七日, 鄉置十八日, 乃有一日之相左是如乎, 我國節氣時刻, 較北京每加四十二分, 若當子正⁷⁸⁾, 初正分爲晝夜, 各屬前後日, 故遂爲一日之差是白遣.

十一月二十四日, 下弦, 一分之相左, 因微秒之或收或捨是白遣.

曆註中二十五處相左, 乃因清鄉宜忌之不同. 竝從鄉書施行何如.

光緒十三年十二月二十日 領事^臣沈

提調上護軍^臣徐

提調協辦內務部事^臣閔

관상감에서 올리는 계목.

오는 무자년(1888) 청나라 역서와 우리나라 역서를 대조해보니, 큰 달과 작은 달, 24기, 삭(朔)·상하현·보름, 해 뜨는 시각·해지는 시각이 거의 다 꼭 맞습니다.

다만 정월 16일 역주(曆註) 중 ‘불의(不宜) 재종(裁種)’이 청나라 역서에는 있는데 우리나라 역서에는 없고, 11월 28일 역주 중 ‘불의재종’이 청나라 역서에는 있는데 우리나라 역서에는 없습니다. 여러 역관들에게 다시 명하여 상세하게 계산하도록 했더니, (실로) 계산을 잘못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3월 곡우(穀雨)를 청나라 역서에서는 9일에 두었는데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10일에 두었고, 4월 소만(小滿)을 청나라 역서에서는 10일에 두었는데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11일에 두었고, 8월 추분(秋分)을 청나라 역서에서는 17일에 두었는데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18일에 두어서 하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절기 시각은 북경의 절기 시각에 언제나 42분을 더해주는데, 만약 절기 시각이 자정(子正)에 있으면 초시(初時)와 정시(正時)가 나뉘어 야자시(夜子時)와 주자시(晝子時)가 되어 각각 전날과 뒷날에 속하게 되니, 결국 하루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11월 24일 하현(下弦) 시각이 1분 차이 나는 것은 미(微)·초(秒) [단위의 남은 수]를 올리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데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역주 중 25군데 차이 나는 것은 단지 청나라와 우리나라의 의기(宜忌) [즉 기신일]이 달라서 생긴 것입니다. 모두 우리나라 역서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78) 여기서는 ‘子正’보다는 ‘子時’가 더 정확한 표현이다. 그러나 ‘자정’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광서 13년(1887) 12월 20일 영사 신 심(沈)

제조 상호군 신 서(徐)

제조 협판내무부사 신 민(閔)

24. 1888년 (고종 25년, 光緒 14년, 戊子) 12월 일 觀象監啓目 79)

觀象監啓目. 來己丑年清鄉書考准爲白有昆, 大小月, 二十四氣, 朔弦望, 日出入時刻, 舉皆脗合是白乎矣.

惟曆註中, 二月十八日不宜出行, 十一月十一日不宜出行, 二十四日不宜出行, 十二月初四日不宜栽種, 初五日不宜出行, 清有鄉無, 更令諸曆官 詳細叩籌, 則實非推步之誤是白遣.

其餘十九處相左皆因清鄉宜忌之不同. 竝從鄉書施行何如.

光緒十四年十二月 日 領事臣沈

提調上護軍臣徐

提調協辦內務部事臣閔

관상감에서 올리는 계목.

오는 기축년(1889) 청나라 역서와 우리나라 역서를 대조해보니, 큰 달과 작은 달, 24기, 삭(朔)·상하현·보름, 해 뜨는 시각·해지는 시각이 거의 다 꼭 맞습니다.

다만 역주(曆註) 중의 2월 18일의 ‘불의(不宜) 출행(出行)’, 11월 11일의 ‘불의 출행’, 24일의 ‘불의 재종(栽種)’, 12월 4일의 ‘불의 재종’, 5일의 ‘불의 출행’이 청나라 역서에는 있는데 우리나라 역서에는 없습니다. 여러 역관들에게 다시 명하여 상세하게 계산하도록 했더니, 실로 계산하는 과정에서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그 밖에 19군데 차이 나는 것은 모두 청나라와 우리나라의 의기(宜忌) [즉 기신일]이 달라서 생긴 것입니다. 모두 우리나라 역서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광서 14년(1888) 12월 일 영사 신

제조 상호군 신 서(徐)

제조 협판내무부사 신 민(閔)

79) 이 계목은 현재 두 조각으로 오려져 있다. 그러나 이 세 부분이 원래 하나의 계목이었음은 분명하다.

25. 1890년 (고종 27년, 光緒 16년, 庚寅) 1월 □일 觀象監啓目 80)

觀象監啓目. 今⁸¹⁾庚寅年清鄉書考准爲白有昆, 大小月, 二十四氣, 朔弦望, 日出入時刻, 舉皆脗合是白乎矣.

惟正月雨水, 二月春分, 六月立秋, 乃有一日之相左是如乎, 我國節氣, 較北京每加四十二分, 若當子時, 則子正前後分爲晝夜, 各屬前後日, 故遂爲一日之差 亦多已例是白乎脗.

末伏, 清置六月二十二日, 鄉置七月初二日是乎所. 大抵置伏之法, 立秋第一庚爲末伏. 清書置立秋於六月二十二日, 適置庚日, 則立秋日卽第一庚故末伏當在六月二十二日也. 以一日相左之致 鄉書立秋退在六月二十三日, 則七月初二日卽第一庚, 故末伏當在七月初二日是白乎脗.

夏至秋分寒露一分之相左, 皆因微秒之或收或捨是白遣.

其餘曆註中十九處相左, 乃因清鄉宜忌之不同. 竝從鄉書施行何如.

沈

提調上護軍_臣徐

提調督辦交涉通商事務_臣閔

관상감에서 올리는 계목.

을 경인년(1890) 청나라 역서와 우리나라 역서를 대조해보니, 큰 달과 작은 달, 24기, 삭(朔)·상하현·보름, 해 뜨는 시각·해지는 시각이 거의 다 꼭 맞습니다.

다만 정월 우수(雨水), 2월 춘분(春分), 6월 입추(立秋)에는 하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절기 시각은 북경의 절기 시각에 언제나 42분을 더해주는데, 만약 절기 시각이 자시(子時)에 있으면 자시의 자정(子正) 전과 자정 후가 나뉘어 야자시(夜子時)와 주자시(晝子時)가 되어 각각 전날과 뒷날에 속하게 되니, 결국 하루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일은 또한 전례가 많이 있습니다.

말복(末伏)을 청나라에서는 6월 2일에 두었고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7월 2일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대저 복일(伏日)을 두는 법은 입추(立秋) 뒤 첫 번째 경일(庚日)을 말복으로 합니다. 청나라 역서에서 입추(立秋)를 6월 22일에 두었고 그날이 마침 경일(庚日)에 해당하니 입추 날이 곧 첫 번째 경일입니다. 그러므로 말복은 응당 6월 22일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차이가 가져온 결과로 우리나라 역서에서는 입추가 물려서 6월 23일에 있습니다. 그러니 7월 2일이 첫 번째 경일입니다. 그러므로 말복은 응당 7월 2일에 있어야 합니다.

80) 이 계목은 현재 위아래 두 부분으로 오려져 있다. 그러나 이 두 부분이 원래 하나의 계목이었음은 분명하다.

81) 이 계목에서는 특이하게도 ‘오는 경인년[來庚寅]’이 아니라 ‘을 경인년[今庚寅]’이라 했다. 단순히 오자일 수도 있지만, 이 해에는 역서 고준 계목을 12월이 아니라 해를 넘겨서 1월에 올렸을 수도 있다. 마지막에 계목을 제출한 날짜 부분이 남아 있지 않아서 어느 쪽이 맞는지 확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문의 글자를 오자라고 단정할 분명한 이유가 없으므로 여기서는 원문대로 번역했다.

다.

하지(夏至), 추분(秋分), 한로(寒露) 시각이 1분 차이 나는 것은 미(微)·초(秒) [단위의 남은 수]를 올리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데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밖에 역주 중 19군데 차이 나는 것은 단지 청나라와 우리나라의 의기(宜忌) [즉 기신 일]이 달라서 생긴 것입니다. 모두 우리나라 역서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심(沈)

제조 상호군 신 서(徐)

제조 독판교섭통상사무 신 민(閔)

觀象監啓目 한자음

1. 1790년(정조 14년, 乾隆 55년, 庚戌) 12월 25일 觀象監啓目

觀象監啓目. 來辛亥年清鄉書考准爲白有昆, 大小月, 二十四氣, 合朔弦望, 日出入時刻, 幾皆相合.

而二月春分, 清十六日, 鄉十七日, 相左一日是白乎乃, 我國, 則節氣時刻, 加四十二分, 故如當子時初正交換時刻, 則差以一日, 自前已然. 此則詳載於皇書各省節氣時刻下朝鮮間是白乎脉.

五月二十二日, 下弦時刻, 有一分相左是白乎乃, 更令曆官推步, 則元無差誤之端是白乎脉.

其他曆註有十六處不同者, 而或值彼我國入節時刻早晚, 或值彼中忌辰日, 則有此相左, 勢所固然是白遣.

五月初五日己卯下, 不宜出行, 針刺, 栽種, 清有鄉無, 十二月二十九日己巳下, 不宜出行, 清有鄉無是白乎乃, 此等相左, 元非關係, 自前竝從鄉書, 今亦依此施行何如.

乾隆五十五年十二月二十五日

提調行判敦寧_臣李 1)

提調知敦寧_臣朴

啓

관상감계목. 래신해년청향서고준위백유곤, 대소월, 이십사기, 합삭현망, 일출입시각, 기개상합.

이이월춘분, 청십륙일, 향십칠일, 상좌일일시백호내, 아국, 즉절기시각, 가사십이분, 고여당자시초정교환시각, 즉차이일일, 자전이연. 차즉상재어황서각성절기시각하조선간시백호며.

오월이십이일, 하현시각, 유일분상좌시백호내, 갱령역관추보, 즉원무

1) 문서가 현재 여기 즈음에서 오려져 있으나, 이 두 부분이 원래 하나의 문서였던 것은 분명하다.

차오지단시백호며.

기타력주유십륙처부동자, 이혹치피아국입절시각조만, 혹치피중기신
일, 즉유차상좌, 세소고연시백견.

오월초오일기묘하, 불의출행, 침자, 재중, 청유향무, 십이월이십구일
기사하, 불의출행, 청유향무시백호내, 차등상좌, 원비관계, 자전병중향
서, 금역의차시행하여.

건륭오십오년십이월이십오일

제조행판돈령신이 2)

제조지돈령신박

계

2) 문서가 현재 여기 즈음에서 오려져 있으나, 이 두 부분이 원래 하나의 문서였던 것은 분명하다.

2. 1791년(정조 15년, 乾隆 56년, 辛亥) 12월 25일 觀象監啓目

觀象監啓目. 來壬子年清鄉曆考准爲白有昆, 大小月, 二十四氣, 合朔弦望, 日出入時刻分, 舉皆相合是白乎矣.

秋社日, 鄉曆則八月初二日, 清曆則八月十二日是白如乎, 大抵置社之法, 用春秋分前後近戊, 而明年秋分, 在於八月初七日, 前五日戊辰, 後五日戊寅, 與秋分相距同, 故鄉曆則取其前, 清曆則取其後, 參之曆式, 俱無所碍.

至於曆註中十五處不同者, 或因彼中忌辰日, 或因節氣早晚, 致此相左, 而元非大段. 竝從鄉曆施行何如.

乾隆五十六年十二月二十五日

提調兵曹判書_臣徐

提調吏曹參判_臣朴

啓

관상감계목. 래임자년청향력고준위백유곤, 대소월, 이십사기, 합삭현망, 일출입시각분, 거개상합시백호의.

추사일, 향력즉팔월초이일, 청력즉팔월십이일시백여호, 대저치사지법, 용춘추분전후근무, 이명년추분, 재어팔월초칠일, 전오일무진, 후오일무인, 여추분상거동, 고향력즉취기전, 청력즉취기후, 참지력식, 구무소애.

지어력주중십오처부동자, 흑인피중기신일, 흑인절기조만, 치차상좌, 이원비대단. 병종향력시행하여.

건륭오십륙년십이월이십오일

제조병조판서_신서

제조이조참판_신박

계

3. 1804년(순조 4년, 嘉慶 9년, 甲子) 12월 25일 觀象監啓目

觀象監啓目. 來乙丑年清鄉書考准爲白有昆, 大小月, 二十四氣, 合朔弦望, 日出入時刻, 一一脗合是白遣.

曆註中有十七處不同者, 而此則皆因彼中忌辰日, 例必相差是白乎旆.

唯正月二十三日戊申下, 宜祭祀, 清無鄉有, 九月十八日丁卯下, 上官, 冠帶, 出行, 移徙, 裁衣, 修造動土, 豎柱上樑, 開市, 立券, 交易, 納財, 安碓磑, 牧養, 清有鄉無, 十二月大寒, 清則置於初一日, 鄉則置於初二日, 相差一日是白乎乃,

此則皆因節氣時刻早晚, 我國則例加四十二分, 故此等相左, 勢所必然. 竝從鄉書施行何如.

嘉慶九年十二月二十五日

提調行戶曹判書臣趙 3)

提調承政院都承旨臣朴

啓

관상감계목. 래을축년청향서고준위백유곤, 대소월, 이십사기, 합삭현망, 일출입시각, 일일문합시백견.

력주중유십칠처부동자, 이차즉개인피중기신일, 레필상차시백호며.

유정월이십삼일무신하, 의제사, 청무향유, 구월십팔일정묘하, 상관, 관대, 출행, 이사, 재의, 수조동토, 수주상량, 개시, 입권, 교역, 납재, 안대애, 목양, 청유향무, 십이월대한, 청즉치어초일일, 향즉치어초이일, 상차일일시백호내,

차즉개인절기시각조만, 아국즉레가사십이분, 고차등상좌, 세소필연. 병중향서시행하여.

가경구년십이월이십오일

제조행호조판서신조 4)

제조승정원도승지신박

계

3) 문서가 현재 여기 즈음에서 오려져 있으나, 이 두 부분이 원래 하나의 문서였던 것은 분명하다.

4) 문서가 현재 여기 즈음에서 오려져 있으나, 이 두 부분이 원래 하나의 문서였던 것은 분명하다.

4. 1805년(순조 5년, 嘉慶 10년, 乙丑) 12월 22일 觀象監啓目

觀象監啓目. 來丙寅年清鄉書考准爲白有昆, 大小月, 合朔弦望, 二十四氣, 日出入時刻, 舉皆脗合是白乎矣.

惟六月大暑, 清置於初八日, 鄉置於初九日, 十二月土王用事, 清置於初九日, 鄉置於初十日, 十二月立春, 清置於二十七日, 鄉置於二十八日是白乎乃, 此則皆因彼我國立節時刻早晚, 我國則例加四十二分, 故致此相左, 勢所固然是白乎旡.

末伏, 清置於六月二十四日, 鄉置於七月初五日, 置伏之法, 立秋後第一庚爲末伏, 而立秋若值庚日, 時刻在午前, 則立秋日爲末伏, 在午後, 則越置次庚者, 昭載於作曆式是白遣.

曆註中有十⁵⁾四處不同者, 若置彼中忌辰日, 則清書之闕而不錄, 自是例也. 竝從鄉書施行何如.

嘉慶十年十二月二十二日 領事臣徐

提調行兵曹⁶⁾判書臣金

提調吏⁷⁾參判臣朴

啓

관상감계목. 래병인년 청향서고준위백유곤, 대소월, 합삭현망, 이십사기, 일출입시각, 거개문합시백호의.

유륙월대서, 청치어초팔일, 향치어초구일, 십이월토왕용사, 청치어초구일, 향치어초십일, 십이월입춘, 청치어이십칠日, 향치어이십팔일시백호내, 차즉개인피아국입절시각조만, 아국즉례가사십이분, 고치차상좌, 세소고연시백호며.

말복, 청치어륙월이십사일, 향치어칠월초오일시백호내, 치복지법, 입추후제일경위말복, 이입추약치경일, 시각재오전, 즉입추일위말복, 재오후, 즉월치차경자, 소재어작력식시백견.

력주중유십⁸⁾사처부동자, 약치피중기신일, 칙청서지궐이불록, 자시례

5) 원문의 글자가 아주 분명하지는 않지만, ‘十’자로 보임.

6) 원문의 글자가 아주 분명하지는 않지만, ‘兵曹’로 보임.

7) 문서 보존 상태 때문에 읽을 수 없으나, 문맥상 ‘曹’일 것.

야. 병중 향서시 행하여.

가경십년십이월이십이일 영사신서

제조행병조⁹⁾판서신김

제조이□¹⁰⁾참판신박

계

8) 원문의 글자가 아주 분명하지는 않지만, ‘十’자로 보임.

9) 원문의 글자가 아주 분명하지는 않지만, ‘兵曹’로 보임.

10) 문서 보존 상태 때문에 읽을 수 없으나, 문맥상 ‘曹’일 것.

5. 1809년(순조 9년, 嘉慶 14년, 己巳) 12월 21일 觀象監啓目

觀象監啓目. 來庚午來¹¹⁾淸鄉曆考准爲白有昆, 大小月, 二十四氣, 合朔弦望, 日出入時刻, 幾皆相合是白乎矣.

五月合朔, 淸午正二刻四分, 鄉午正二刻五分, 相差一分是白遣, 七月日出入, 淸置於十九日, 鄉置於十八日, 相差一日是白乎等以, 更令曆官, 詳細推步是白乎矣, 終不得差誤之端是白如乎, 或因用法之不同, 致此一二處參差, 亦多已例是白乎旆.

其餘曆註中十八處不同者, 皆因彼中忌辰日淸書闕而不錄, 勢所固然. 竝從鄉書施行何如.

嘉慶十四年十二月二十一日

提調吏曹判書_臣金 12)

提調吏曹參判_臣李

啓

관상감계목. 래경오래¹³⁾청향력고준위백유곤, 대소월, 이십사기, 합삭현망, 일출입시각, 기개상합시백호의.

오월합삭, 청오정이각사分, 향오정이각오분, 상차일분시백견, 칠월일출입, 청치어십구일, 향치어십팔일, 상차일일시백호등이, 갱령역관, 상세추보시백호의, 중부득차오지단시백여호, 흑인용법지부동, 치차일이처참차, 역다이레시백호며.

기여력주중십팔처부동자, 개인피중기신일청서필이불록, 세소고연. 병종향서시행하여.

가경십사년십이월이십일일

제조이조판서_臣신김 14)

제조이조참판_臣신이

계

11) 來: '年'의 오기인 것으로 보임.

12) 문서가 현재 여기 즈음에서 오려져 있으나, 이 두 부분이 원래 하나의 문서였던 것은 분명하다.

13) 來: '年'의 오기인 것으로 보임.

14) 문서가 현재 여기 즈음에서 오려져 있으나, 이 두 부분이 원래 하나의 문서였던 것은 분명하다.

6. 1810년(순조 10년, 嘉慶 15년, 庚午) 12월 22일 觀象監啓目

觀象監啓目. 來辛未年清鄉曆考准爲白有昆, 大小月, 二十四氣, 合朔弦望, 日出入時刻, 幾皆脗合是白乎矣.

二月合朔, 清書爲午初三刻十一分, 鄉書爲午初三刻十二分, 八月望, 清書爲申初初刻十分, 鄉書爲申初初刻九分, 兩處相差各爲一分是白如乎, 更令曆官, 一依曆象考成本法, 細推詳覈是白乎則, 蓋因秒微零數之或收或捨, 而實非乘除比例之做錯是白乎歟.

閏三月十五日, 不宜出行, 清無鄉有, 五月十五日, 療病, 清無鄉有, 此則彼我國用法之不同, 元無關係是白乎歟.

其他曆註中十四處不同者, 若值彼中忌辰日, 則清書之闕而不錄, 自是例也. 竝從鄉書施行何如.

嘉慶十五年十二月二十二日

提調吏曹判書_臣朴

提調行護軍_臣李

啓

관상감계목. 래신미년청향력고준위백유곤, 대소월, 이십사기, 합삭현망, 일출입시각, 기개문합시백호의.

이월합삭, 청서위오초삼각십일분, 향서위오초삼각십이분, 팔월망, 청서위신초초각십분, 향서위신초초각구분, 양처상차각위일분시백여호, 갱령역관, 일의력상고성본법, 세추상핵시백호즉, 개인초미령수지혹수혹사, 이실비승제비례지주착시백호며.

윤삼월십오일, 불의출행, 청무향유, 오월십오일, 료병, 청무향유, 차즉피아국용법지부동, 원무관계시백호며.

기타력주중십사처부동자, 약치피중기신일, 즉청서지궐이불록, 자시례야. 병종향서시행하여.

가경십오년십이월이십이일

제조이조판서_신박

제조행호군신이

계

7. 1818년(순조 18년, 嘉慶 23년, 戊寅) 12월 25일 觀象監啓目

觀象監啓目. 來己卯年清鄉書考准爲白有昆, 大小月, 二十四氣, 合朔弦望, 日出入時刻, 舉皆脗合是白乎矣.

正月初十日曆註中, 不宜出行, 清無鄉有是白乎脗, 五月十七日小暑, 清已正一刻七分, 鄉已正一刻八分, 相差爲一分. 此則彼我用法之或有不同.

而至於日出入, 清置於三十日, 鄉置於二十九日, 雖差一日是白乎乃, 此亦推步之際, 尾位秒微之或收或捨而然, 似此相差既多已例是乎脗.

其他曆註中十處不同, 皆因彼中忌辰, 例必相左. 竝從鄉書施行何如.

嘉慶二十三年十二月二十五日

提調行知中樞府事_臣沈

提調行護軍_臣金

관상감계목. 래기묘년청향서고준위백유곤, 대소월, 이십사기, 합삭현망, 일출입시각, 거개문합시백호의.

정월초십일력주중, 불의출행, 청무향유시백호며, 오월십칠일소서, 청사정일각칠분, 향사정일각팔분, 상차위일분. 차즉피아용법지혹유부동.

이지어일출입, 청치어삼십일, 향치어이십구일, 수차일일시백호내, 차역추보지제, 미위초미지혹수혹사이연, 사차상차기다이례시호며.

기타력주중십처부동, 개인피중기신, 레필상좌. 병종향서시행하여.

가경이십삼년십이월이십오일

제조행지중추부사신심

제조행호군신김

8. 1819년(순조 19년, 嘉慶 24년, 己卯) 12월 26일 觀象監啓目

觀象監啓目. 來庚辰年清鄉書考准爲白有昆, 大小月, 二十四氣, 合朔弦望, 舉皆脗合是白遣.

曆註中十七處不同者, 皆因彼中忌辰日, 例必相差是白乎旆.

惟正月日出入時刻, 清置初六日, 鄉置初七日, 而十二月小寒時刻, 清爲亥正二刻四分, 鄉爲亥正二刻三分, 相差一分是白乎乃, 此則乘除之際, 秒微零數之或收或捨而然是白乎旆.

八月十三日, 曆註下不宜動土, 清有鄉無, 而其日既註安葬, 則又書不宜動土, 卽清書之誤也. 竝從鄉書施行何如.

嘉慶二十四年十二月二十六日 領事_臣徐

提調行議政府左參贊_臣林

提調行護軍_臣金

관상감계목. 래경진년청향서고준위백유곤, 대소월, 이십사기, 합삭현망, 거개문합시백견.

력주중십칠처부동자, 개인피중기신일, 레필상차시백호며.

유정월일출입시각, 청치초육일, 향치초칠일, 이십이월소한시각, 청위해정이각사분, 향위해정이각삼분, 상차일분시백호내, 차즉승제지제, 초미영수지혹수혹사이연시백호며.

팔월십삼일, 력주하불의동토, 청유향무, 이기일기주안장, 칙우서불의동토, 즉청서지오야. 병중향서시행하여.

가경이십사년십이월이십륙일 영사_臣신서

제조행의정부좌참찬_臣신림

제조행호군_臣신김

9. 1863년(철종 14년, 同治 2년, 癸亥) 12월 26일 觀象監啓目

15)

書則亥正初刻七分，淸書則亥正初刻八分，相左爲一分，故更令諸曆官，詳細推步，則皆因微秒之或收或捨，亦多已例是白乎□。□□¹⁶⁾中八處相左，乃因彼我宜忌之不同。竝從鄉書施行何如。

同治二年十二月二十六日 領事臣金

提調兼知中樞府事臣金

提調禮曹判書臣金

서즉해정초각칠분, 청서즉해정초각팔분, 상좌위일분, 고갱령제역관, 상세추보, 즉개인미초지혹수혹사, 역다이례시백호□. □□¹⁷⁾중팔처상좌, 내인피아의기지부동. 병중향서시행하여.

동치이년십이월이십육일 영사신김

제조겸지중추부사신김

제조예조판서신김

15) 이 계목은 서두를 포함한 앞부분은 없고, 문서의 이 부분부터 남아 있다.

16) 문서 보존 상태 때문에 읽을 수 없는 글자들이지만, 문맥상 ‘旡 曆註’일 것으로 보임. 번역은 이 추정에 따라서 했음.

17) 문서 보존 상태 때문에 읽을 수 없는 글자들이지만, 문맥상 ‘旡 曆註’일 것으로 보임. 번역은 이 추정에 따라서 했음.

10. 1864년(고종 1년, 同治 3년, 甲子) 12월 26일 觀象監啓目

觀象監啓目. 來乙丑年清鄉書考准爲白有昆, 大小月, 二十四氣, 合朔弦望, 日出入時刻, 舉皆脗合是白乎矣.

惟小滿時刻, 鄉書則午初初刻, 清書則午初初刻一分, 相左爲一分是白如乎, 更令諸曆官, 詳細推步, 則因微秒之或收或捨, 亦多已例是白乎旆.

曆註中二十處相左, 乃因彼我宜忌之不同. 竝從鄉書施行何如.

同治三年十二月二十六日 領事臣金

提調上護軍臣鄭

提調護軍臣金

관상감계목. 래을축년청향서고준위백유곤, 대소월, 이십사기, 합삭현망, 일출입시각, 거개문합시백호의.

유소만시각, 향서즉오초초각, 청서즉오초초각일분, 상좌위일분시백여호, 갱령제역관, 상세추보, 즉인미초지혹수혹사, 역다이례시백호며.

력주중이십처상좌, 내인피아의기지부동. 병종향서시행하여.

동치삼년십이월이십육일 영사신김

제조상호군신정

제조호군신김

11. 1865년(고종 2년, 同治 4년, 乙丑) 12월 26일 觀象監啓目

觀象監啓目. 來丙寅年清鄉書考准爲白有昆, 大小月, 合朔弦望, 日出入時刻, 舉皆脗合是白乎矣.

惟九月段目之土王, 十月節氣之立冬, 乃有一日之相左是如乎, 我國, 則節氣時刻, 例加四十二分, 故如當子時初正交換時刻, 則差以一日, 而今此相左, 亦皆因此而然是白遣.

曆註中二處之相左, 式由彼我宜忌之致. 竝從鄉書施行何如.¹⁸⁾

19)

同治四年十二月二十六日 領事_臣趙

提調南綾君_臣洪

提調行護軍_臣金

관상감계목. 래병인년청향서고준위백유곤, 대소월, 합삭현망, 일출입시각, 거개문합시백호의.

유구월단목지토왕, 십월절기지입동, 내유일일지상좌시여호, 아국, 즉절기시각, 예가사십이분, 고여당자시초정교환시각, 즉차이일일, 이금차상좌, 역개인차이연시백견.

력주중이처지상좌, 식유피아의기지치. 병종향서시행하여.²⁰⁾

21)

동치사년십이월이십육일 영사신조

제조남릉군신홍

제조행호군신김

18) 맨 끝의 ‘行何如’ 세 글자는 문서에서 잘려 나가서 없으나, 투식어이므로 문맥을 고려해서 보충해 넣었음.

19) 이 문서는 현재 이 부분에서 잘려서 두세 조각으로 나뉘어 있다.

20) 맨 끝의 ‘行何如’ 세 글자는 문서에서 잘려 나가서 없으나, 투식어이므로 문맥을 고려해서 보충해 넣었음.

21) 이 문서는 현재 이 부분에서 잘려서 두세 조각으로 나뉘어 있다.

12. 1866년(고종 3년, 同治 5년, 丙寅) 12월 20일 觀象監啓目

觀象監啓目. 來丁卯年清鄉書考准爲白有昆, 大小月, 二十四氣, 合朔弦望, 日出入時刻, 舉皆脗合是白乎矣.

惟曆註中十四處相左, 皆因彼我宜忌之不同. 竝從鄉書施行何如.

同治五年十二月二十日

提調行護軍_臣李

提調行護軍_臣南

관상감계목. 래정묘년청향서고준위백유곤, 대소월, 이십사기, 합삭현망, 일출입시각, 거개문합시백호의.

유력주중십사처상좌, 개인피아의기지부동. 병중향서시행하여.

동치오년십이월이십일

제조행호군신이

제조행호군신남

13. 1867년 (고종 4년, 同治 6년, 丁卯) 12월 27일 觀象監啓目

觀象監啓目. 來戊辰年淸鄉書考准爲白有昆, 大小月, 合朔弦望, 二十四氣, 一一脗合.

而三月二十一日, 日出入時刻, 淸置於二十二日, 相左爲一日是白乎矣, 日出入, 因值□²²⁾度, 每多進退之例是白乎旆.

曆註中十一處不同者, 若值彼中忌辰, 則闕而不書, 自是例規是白遣.

四月初二日下, 不宜出行, 淸有鄉無, 十五日下, 不宜出行, 淸無鄉有, 二十日下, 嫁娶, 淸無鄉有, 九月二十日下, 牧養, 淸無鄉有, 十二月二十九日下, 不宜出行, 淸有鄉無是白乎乃, 此等相左, 元非關係, 自前竝從鄉書, 今亦依此施行何如.

同治六年十二月二十七日 領事臣金

提調上護軍臣南

提調大護軍臣洪

관상감계목. 래무진년청향서고준위백유곤, 대소월, 합삭현망, 이십사기, 일일문합.

이삼월이십일일, 일출입시각, 청치어이십이일, 상좌위일일시백호의, 일출입, 인치□²³⁾도, 매다진퇴지례시백호며.

력주중십일처부동자, 약치피중기신, 즉궐이불서, 자시례규시백견.

사월초이일하, 불의출행, 청유향무, 십오일하, 불의출행, 청무향유, 이십일하, 가취, 청무향유, 구월이십일하, 목양, 청무향유, 십이월이십구일하, 불의출행, 청유향무시백호내, 차등상좌, 원비관계, 자전병종향서, 금역의차시행하여.

동치육년십이월이십칠일 영사신김

제조상호군신남

제조대호군신흥

22) ‘雙’자인 것으로 보이거나 분명하지 않다.

23) ‘雙’자인 것으로 보이거나 분명하지 않다.

14. 1869년 (고종 6년, 同治 8년, 己巳) 12월 20일 觀象監啓目

觀象監啓目. 來庚午年清鄉書考准爲白有昆, 大小月, 合朔弦望, 二十四氣, 日出入時刻, 一一脗合是白乎矣.

五月夏至, 九月霜降, 乃有一日之相左是如乎,

我國節氣時刻, 較北京每加四十二分, 若當子時, 則子正前後, 分爲夜子晝子, 而各屬於前後日, 故遂爲一日之差. 今此相左, 亦因此而然是白遣.

曆註中, 年神下, 乙庚, 鄉書書以庚乙, 九月初六日下, 上官, 清有鄉無, 十六日下, 嫁娶時刻, 清有鄉無, 十月十三日下, 納財畋獵, 鄉書書以畋獵納財是白乎乃, 此等相左, 元無關係, 自前竝從鄉書, 今亦依此施行何如.

同治八年十二月二十日 領事臣金

提調行上護軍臣鄭

提調行大護軍臣朴

관상감계목. 래경오년청향서고준위백유곤, 대소월, 합삭현망, 이십사기, 일출입시각, 일일문합시백호의.

오월하지, 구월상강, 내유일일지상좌시여호,

아국절기시각, 교북경매가사십이분, 약당자시, 즉자정전후, 분위야자주자, 이각속어전후일, 고수위일일지차. 금차상좌, 역인차이연시백견.

력주중, 년신하, 을경, 향서서이경을, 구월초육일하, 상관, 청유향무, 십육일하, 가취시각, 청유향무, 십월십삼일하, 납재전렵, 향서서이전렵 납재시백호내, 차등상좌, 원무관계, 자전병중향서, 금역의차시행하여.

동치팔년십이월이십일 영사신김

제조행상호군신정

제조행대호군신박

15. 1870년 (고종 7년, 同治 9년, 庚午) 12월 20일 觀象監啓目

24)

刻九分 鄉書則丑初初刻十分 相左爲一分是白如乎,
更令諸曆官, 詳細推□, □²⁵⁾因微秒之或收或捨, 亦多已例是白遣.

曆註中二十四處相左, 乃因彼我宜忌之不同. 竝從鄉書施行何如.

同治九年十二月二十日 領事臣金

提調行上護軍臣鄭

提調行大護軍臣朴

각구분 향서즉축초초각십분 상좌위일분시백여호,
갱령제역관, 상세추□, □²⁶⁾인미초지혹수혹사, 역다이례시백견.

력주중이십사처상좌, 내인피아의기지부동. 병종향서시행하여.

동치구년십이월이십일 영사신김

제조행상호군신정

제조행대호군신박

24) 이 계목은 서두를 포함한 앞부분은 없고, 문서의 이 부분부터 남아 있다.

25) 문서 보존 상태 때문에 읽을 수 없는 글자들이지만, 문맥상 ‘步, 則’일 것으로 보임. 번역은 이 추정에 따라
서 했음.

26) 문서 보존 상태 때문에 읽을 수 없는 글자들이지만, 문맥상 ‘步, 則’일 것으로 보임. 번역은 이 추정에 따라
서 했음.

16. 1871년 (고종 8년, 同治 10년, 辛未) 12월 20일 觀象監啓目

觀象監啓目. 來壬申年清鄉書考准爲白有昆, 大小月, 二十四氣, 合朔弦望, 日出入時刻, 舉皆脗合是白乎矣.

惟曆註中二十二處相左, 皆因彼我宜忌之不同. 竝從鄉書施行何如.

同治十年十二月二十日 領事_臣金

提調大提學_臣朴

관상감계목. 래임신년청향서고준위백유곤, 대소월, 이십사기, 합삭현망, 일출입시각, 거개문합시백호의.

유력주중이십이처상좌, 개인피아의기지부동. 병중향서시행하여.

동치십년십이월이십일 영사_臣김

제조대제학_臣박

17. 1876년 (고종 13년, 光緒 2년, 丙子) 12월 27일 觀象監啓目

觀象監啓目. 來丁丑年清鄉書考准爲白有昆, 大小月, 合朔弦望, 二十四氣, 日出入時刻, 一一脗合爲白矣.

節氣中四月亡種, 乃有一日之相左是如乎, 我國節氣時刻, 較北京每加四十二分, 若當子時, 則初正分爲晝夜, 各屬於前後日, 故遂爲一日之差. 同日之日出入, 隨以爲差.

五月十一日下, 不宜出行, 清無鄉有, 亦因亡種相左而然是白遣.

其他曆註中二十一處相左, 乃因彼我宜忌之不同. 竝從鄉書施行何如.

光緒二年十二月二十七日 領事_臣李

提調行大護軍_臣金

提調宗正卿_臣李

관상감계목. 래정축년청향서고준위백유곤, 대소월, 합삭현망, 이십사기, 일출입시각, 일일문합위백의.

절기중사월망중, 내유일일지상좌시여호, 아국절기시각, 교북경매가사 십이분, 약당자시, 즉초정분위주야, 각속어전후일, 고수위일일지차. 동일지일출입, 수이위차.

오월십일일下, 불의출행, 청무향유, 역인망종상좌이연시백견.

기타력주중이십일처상좌, 내인피아의기지부동. 병중향서시행하여.

광서이년십이월이십칠일 영사신이

제조행대호군신김

제조중정경신이

18. 1877년 (고종 14년, 光緒 3년, 丁丑) 12월 일 觀象監啓目

觀象監啓目. 來戊寅年清鄉曆考准爲白有昆, 大小月, 二十四氣, 朔弦望, 日出入時刻, 舉皆脗合是白乎矣.

惟秋社, 淸書則置於九月初二日, 鄉書則置於八月二□□²⁷⁾日, 大抵置社之法, 例於春秋兩仲朔, 而今淸書之用第六戊者, 取其春秋分後近戊, 則用法或有變通而然.

曆註中十五處相左, 皆因彼我宜忌之不同. 竝從鄉書施行何如.

光緒三年十二月 日 領事臣李

提調大護軍臣金

관상감계목. 래무인년청향력고준위백유곤, 대소월, 이십사기, 삭현망, 일출입시각, 거개문합시백호의.

유주사, 청서즉치어구월초이일, 향서즉치어팔월이□□²⁸⁾일, 대저치사지법, 레어춘추양중삭, 이금청서지용제육무자, 취기춘추분후근무, 즉용법혹유변통이연.

력주중십오처상좌, 개인피아의기지부동. 병중향서시행하여.

광서삼년십이월 일 영사신이

제조대호군신김

27) 이 두 글자는 문서 보존 상태 때문에 읽을 수 없으나, 문맥상 첫 글자는 ‘十’이고, 『만세력』 해당 부분과 대조해보면 두 번째 글자는 ‘一’임. 번역은 이에 따랐음.

28) 이 두 글자는 문서 보존 상태 때문에 읽을 수 없으나, 문맥상 첫 글자는 ‘十’이고, 『만세력』 해당 부분과 대조해보면 두 번째 글자는 ‘一’임. 번역은 이에 따랐음.

19. 1886년 (고종 23년, 光緒 12년, 丙戌) 12월 일 觀象監啓目

觀象監啓目. 來丁亥年清鄉書考准爲白有昆, 大小月, 二十四氣, 朔弦望, 日出入時刻, 舉皆脗合是白乎矣.

惟三月初一日, 合朔時刻, 一分之相左, 因微秒之或收或捨是白遣.

節氣中, 八月寒露, 清置二十二日, 鄉置二十三日, 乃有一日之相左是如乎, 我國節氣時刻, 較北京每加四十二分, 若當子時, 則初正分爲晝夜, 各屬前後日, 故遂爲一日之差是白遣.

十一月中, 十二日, 不宜出行, 二十二日, 不宜裁種, 清有鄉無, 更令諸曆官, 詳細叩籌, 則實非推步之誤是白遣.

曆註中二十三處相左, 乃因清鄉宜忌之不同. 竝從鄉書施行何如.

光緒十二年十二月 日 領事_臣沈

提調判敦寧_臣徐

提調禮曹判書_臣閔

관상감계목. 래정해년청향서고준위백유곤, 대소월, 이십사기, 삭현망, 일출입시각, 거개문합시백호의.

유삼월초일일, 합삭시각, 일분지상좌, 인미초지혹수혹사시백견.

절기중, 팔월한로, 청치이십이일, 향치이십삼일, 내유일일지상좌시여호, 아국절기시각, 교북경매가사십이분, 약당자시, 즉초정분위주야, 각속전후일, 고수위일일지차시백견.

십일월중, 십이일, 불의출행, 이십이일, 불의재종, 청유향무, 갱령제역관, 상세고주, 즉실비추보지오시백견.

력주중이십삼처상좌, 내인청향의기지부동. 병종향서시행하여.

광서십이년십이월 일 영사신심

제조판돈령신서

제조예조판서신민

20. 1887년 (고종 24년, 光緒 13년, 丁亥) 12월 20일 觀象監啓目

觀象監啓目. 來戊子年清鄉書考准爲白有昆, 大小月, 二十四氣, 朔弦望, 日出入時刻, 舉皆脗合是白乎矣.

惟正月十六日, 曆註中, 不宜裁種, 清有鄉無, 十一月二十八日, 曆註中, 不宜裁種, 清有鄉無, 更令諸曆官, 詳細叩籌, 則實非推步之誤是白遣.

三月穀雨, 清置初九日, 鄉置初十日, 四月小滿, 清置初十日, 鄉置十一日, 八月秋分, 清置十七日, 鄉置十八日, 乃有一日之相左是如乎, 我國節氣時刻, 較北京每加四十二分, 若當子正²⁹⁾, 初正分爲晝夜, 各屬前後日, 故遂爲一日之差是白遣.

十一月二十四日, 下弦, 一分之相左, 因微秒之或收或捨是白遣.

曆註中二十五處相左, 乃因清鄉宜忌之不同. 竝從鄉書施行何如.

光緒十三年十二月二十日 領事^臣沈

提調上護軍^臣徐

提調協辦內務部事^臣閔

관상감계목. 래무자년청향서고준위백유곤, 대소월, 이십사기, 삭현망, 일출입시각, 거개문합시백호의.

유정월십육일, 력주중, 불의재종, 청유향무, 십일월이십팔일, 력주중, 불의재종, 청유향무, 갱령제역관, 상세고주, 즉실비추보지오시백견.

삼월곡우, 청치초구일, 향치초십일, 사월소만, 청치초십일, 향치십일 일, 팔월추분, 청치십칠일, 향치십팔일, 내유일일지상좌시여호, 아국절 기시각, 교북경매가사십이분, 약당자정³⁰⁾, 초정분위주야, 각속전후일, 고수위일일지차시백견.

십일월이십사일, 하현, 일분지상좌, 인미초지혹수혹사시백견.

력주중이십오처상좌, 내인청향의기지부동. 병중향서시행하여.

광서십삼년십이월이십일 영사신심

제조상호군신서

제조협판내무부사신민

29) 여기서는 '子正'보다는 '子時'가 더 정확한 표현이다. 그러나 '자정'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30) 여기서는 '子正'보다는 '子時'가 더 정확한 표현이다. 그러나 '자정'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1823년 (순조 23년, 道光 3년, 癸未) 12월 일 관상감계목 ³¹⁾

觀象監啓目. 來甲申年清鄉書考准爲白有昆, 大小月, 二十四氣, 日出入時刻, 舉皆脗合是白乎矣.

惟正月, 上弦, 鄉書巳正三刻三分, 清書巳正三刻四分, 望, 鄉書寅初初刻十三分, 清書寅初初刻十四分, 二月, 下弦, 鄉書戌初初刻八分, 清書戌初初刻十分, 三月, 合朔, 鄉書亥正三刻十三分, 清書夜子初初刻, 望, 鄉書夜子初二刻五分, 清書夜子初二刻六分, 下弦, 鄉書未正初刻九分, 清書未正初刻八分, 四月, 合朔, 鄉書午正一刻一分, 清書午正一刻二分, 望, 鄉書巳正一刻十四分, 清書巳正二刻, 下弦, 鄉書辰正二刻一分, 清書辰正二刻二分, 六月, 下弦, 鄉書申初三刻一分, 清書申初三刻二分, 七月, 上弦, 鄉書卯初二刻十四分, 清書卯初三刻, 望, 鄉書寅初一刻五分, 清書寅初一刻六分, 下弦, 鄉書寅正一刻四分, 清書寅正一刻五分, 閏七月, 合朔, 鄉書亥正一刻四分, 清書亥正一刻三分, 望, 鄉書戌初一刻八分, 清書戌初一刻十分, 八月, 合朔, 鄉書卯正一刻六分, 清書卯正一刻七分, 上弦, 鄉書辰初一刻十一分, 清書辰初一刻十二分, 望, 鄉書午初二刻十一分, 清書午初二刻十分, 九月, 上弦, 鄉書丑初三刻十二分, 清書丑初三刻十一分, 望, 鄉書寅初二刻一分, 清書寅³²⁾二刻, 十月, 上弦, 鄉書亥正三刻, 清書亥正三刻二分, 十一月, 合朔, 鄉書酉正二刻六分, 清書酉正二刻五分, 上弦, 鄉書戌正初刻五分, 清書戌正初刻六分, 望, 鄉書辰初一刻十三分, 清書辰初一刻十四分, 十二月, 上弦, 鄉書申正初刻九分, 清書申正初刻八分, 下弦, 鄉書巳初三刻十四分, 清書巳正初刻, 有此一二分相左是白乎矣, 更令諸曆官, 精細推步, 則法理昭然, 終不見差誤之端是乎旃.

十二月十一日己巳下, 不宜出行, 清有鄉無, 其日既註進人口, 則去不宜出行, 乃是曆式之當然是乎所, 清書之有此錯誤, 實所難究是乎旃,

曆註中十九處相左, 皆因彼中忌辰, 自是例也. 竝從鄉書施行何如.

31) 이 계목의 작성 연도는 순조 23년(1823)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고종 20년(1883)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32) ‘寅’ 뒤에 ‘初’자가 누락되었음.

관상감계목. 래갑신년청향서고준위백유곤, 대소월, 이십사기, 일출입시각, 거개문합시백호의.

유정월, 상현, 향서사정삼각삼분, 청서사정삼각사분, 망, 향서인초초각십삼분, 청서인초초각십사분, 이월, 하현, 향서술초초각팔분, 청서술초초각십분, 삼월, 합삭, 향서해정삼각십삼분, 청서야자초초각, 망, 향서야자초이각오분, 청서야자초이각육분, 하현, 향서미정초각구분, 청서미정초각팔분, 사월, 합삭, 향서오정일각일분, 청서오정일각이분, 망, 향서사정일각십사분, 청서사정이각, 下弦, 향서진정이각일분, 청서진정이각이분, 육월, 하현, 향서신초삼각일분, 청서신초삼각이분, 칠월, 상현, 향서묘초이각십사분, 청서묘초삼각, 망, 향서인초일각오분, 청서인초일각육분, 하현, 향서인정일각사분, 청서인정일각오분, 윤칠월, 합삭, 향서해정일각사분, 청서해정일각삼분, 망, 향서술초일각팔분, 청서술초일각십분, 팔월, 합삭, 향서묘정일각육분, 청서묘정일각칠분, 상현, 향서진초일각십일분, 청서진초일각십이분, 망, 향서오초이각십일분, 청서오초이각십분, 구월, 상현, 향서축초삼각십이분, 청서축초삼각십일분, 망, 향서인초이각일분, 청서인³³⁾이각, 십월, 상현, 향서해정삼각, 청서해정삼각이분, 십일월, 합삭, 향서유정이각육분, 청서유정이각오분, 상현, 향서술정초각오분, 청서술정초각육분, 망, 향서진초일각십삼분, 청서진초일각십사분, 십이월, 상현, 향서신정초각구분, 청서신정초각팔분, 하현, 향서사초삼각십사분, 청서사정초각, 유차일이분상좌시백호의, 갱령제역관, 정세추보, 즉법리소연, 종불견차오지단시호며.

십이월십일일기사하, 불의출행, 청유향무, 기일기주진인구, 즉거불의출행, 내시역식지당연시호소, 청서지유차착오, 실소난구시호며,

력주중십구처상좌, 개인피중기신, 자시례야. 병종향서시행하여.

33) ‘寅’ 뒤에 ‘初’자가 누락되었음.

觀象監啓目 (또는 觀象監淸鄉曆考準臚錄) 해제

표제사항	해당 없음
저자사항	觀象監 三曆廳
판사항	筆寫本
발행사항	필사지: 漢陽 필사자: 觀象監 三曆廳 필사년: 정조 14년(1790) ~ 고종 27년(1890)
형태사항	□□張

1. 개요

2. 조선후기의 조선역서-중국역서 대조·조사 작업

- 2-1. 역서 고준의 목적
- 2-2. 조선후기에 역서 고준의 중요성이 커진 배경
- 2-3. 관상감에서의 역서 고준 작업

3. 작성자

4. 본 자료의 구성 및 내용

- 4-1. 자료의 구성
 - 각 계목의 구성과 양식
 - 고준 등록
- 4-2. 주요 내용
 - 본문 내용의 구성
 - 주요 문제들 및 검토 결과
- 4-3 계목별 내용
 - 총괄 보고에서 언급된 항목들
 - 사안별로 검토된 문제들

5. 본 자료의 자료적 가치

- 5-1 자료의 진위
 - 계목 작성자
 - 등록 작성 시기
- 5-2 자료의 가치

6. 키워드

1. 개요

본 자료는 조선후기에 국가 천문관서인 관상감에서 그해에 조선에서 편찬한 역서와 중국에서 편찬한 역서의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를 해마다 면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왕에게 보고한 문서인 관상감계목(觀象監啓目)들을 차례대로 등서(謄書)해 놓은 등록(謄錄)이다. 수록된 계목(啓目)은 현재 정조 14년(1790)부터 고종 27년(1890) 사이의 25개가 확인되고 있다. 내용과 형태로 보아 ‘관상감청향력고준등록(觀象監淸鄉曆考準謄錄)’ 정도가 적절한 이름일 것으로 보이는 본 자료는 관상감의 주 업무 중 하나인 역서 편찬과 관련해서 관상감 내부에서 작성한 1차 문서로, 조선후기의 천문학과 관상감의 활동상을 살펴는 데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2. 조선후기의 조선역서-중국역서 대조 · 조사 작업

2-1. 역서 고준의 목적

본 자료는 조선후기에 조선에서 편찬·간행한 역서와 중국에서 편찬·간행한 역서의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를 해마다 대조·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기록[啓目]을 차례대로 모아 놓은 문서다. 본 자료에 수록된 보고 기록들의 주제는 해마다 수행한 이런 작업, 당시의 표현으로는 ‘청향력고준(淸鄉曆考準)’ 또는 ‘황력고준(皇曆考準)’이라고 하던 작업의 결과와 그것에 대한 담당관서[觀象監]의 의견이었다. 2절에서는 이런 역서 고준 작업을 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조선 역서의 내용을 중국 역서의 그것과 같게 만들려고 한 이유부터 살펴봐야 할 것이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조선시대에 조선 국왕은 중국 황제와 조공-책봉 관계에 놓여 있었다. 조공-책봉이라는 이름과 그 실상 사이의 거리는 시기에 따라 달랐지만, 그런 관계를 드러내는 가장 가시적인 상징이 연호(年號)나 역서(曆書) 같은 것들이었다는 점은 내내 변함이 없었다. 조선 조정에서는 중국 황제의 연호와 중국 역서를 쓰는 것으로 중국적 천하질서에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던 것이다.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따로 역서를 만들어 쓰면서도 그런 사실을 중국에 어떻게든 숨기려고 했다. 같은 이유로 역서의 내용도 가능한 한 중국 역서의 것과 일치시키려고 했다. 특히 ‘역일(曆日)’ 즉 날짜와 관련된 월의 대소나 윤달의 위치와 같은 항목들은 중국 역서의 것과 완전히 일치시켜야 했다. 이는 어떤 날이 몇월 며칠에 해당하느냐는 문제인데, 중국과 같은 날짜를 쓴다는 것은 중국적 시간질서를 수용하는 것의 핵심에 해당되었기 때문이다. 중국 황제와의 조공-책봉 관계가 부과하는 이런 제약이, 역서에 담을 항목과 그 내용의 선택이라는 면에서 중국 역서와의 일치를 추구하게 만든 주요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역서와의 일치 추구나 그것으로 이끈 요인에 대해서는 다른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조선시대 내내 중국은 선진적인 제도와 문물의 근원이었고, 역서 제작을 위한 역법 지식도 중국에서 들여온 것이었다. 중국 천문관서의 역법 운용 능력도 일반적으로 높이 평가되었다. 따라서 매년 그들이 내놓은 작업 결과물인 역서도 정확성 면에서 신뢰할 만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결국 중국 역서와의 일치를 추구한다는 것에는 같은 역서 항목에 대해, 같은 계산법을 가지고 하는 작업에서 일종의 ‘정답’으로 간주되는 것과 차이가 없게 만든다는 의미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역서와의 일치를 추구한다는 것에 대해 당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의식하고 있었던 것은 주로 이런 측면이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행한 역서 고준 작업은 안팎으로 복합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역서 편찬 담당기관인 관상감에서 역서제작 작업을 제대로 했는지 검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역서 편찬은 천문역산학을 전문으로 하는 관원[曆官]들이 맡아 했고, 역(曆) 계산과 역주(曆註) 배치, 판각과 인쇄까지 역서 제작의 모든 단계에서 거듭거듭 점검하기는 했지만, 실수와 잘못이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다. 그런 실수와 잘못을 찾아내는 간단한 방법인, 동일한 항목을 담고 있는 중국 역서의 내용과 대조해 보는 것이었다. 연말에 중국 역서를 받아오면 곧바로 두 역서를 대조·검토하도록 했고, 사소하지 않은 차이가 발견되면 그에 대해 책임이 있는 역관(曆官)에게 벌을 주었다. 역서 고준 작업의 일상적인 기능은 이처럼 역관들의 업무 능력 부족이나 태만을 감시하고 방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거기서 중국 역서는 일종의 ‘정답지’의 역할을 맡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서 고준 작업에는 좀 더 심각한 측면도 있었다. 관상감에서 운용하고 있는 역법과 그것의 운용 능력의 적절성을 점검한다는 또 다른 목적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목적은 고준한 결과가 도무지 원인을 찾아낼 수 없는 차이를 포함하고 있을 때 수면 위로 올라온다. 이런 경우에 상황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일 수 있었다. 첫째는, 현행 역법에 대한 관상감 역관들의 이해와 운용 능력에 어딘가 문제가 있고, 그것이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중국에서 최근 언젠가 역법이나 역서 제작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그것이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그 중 어느 경우인지는 더 깊은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알 수 있었는데, 그런 조사는 주로 중국에 사람을 파견해서 사정을 알아보고 관련 자료를 구해 와서 연구하는 것이었다. 둘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원인이 조선의 역관들에게 있는 것이었다면 역법에 대한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하고, 중국 쪽에 있는 것이었다면 역법의 추가적인 도입이 필요했던 것이다. 더 깊은 수준에서 작동하는, 역서 고준 작업의 두 번째 기능은 이처럼 역법 및 역법 운용 능력 관련 관상감의 상황이나 역법 개정 관련 중국의 동향을 감지해내는 측수 같은 구실을 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2-2. 조선후기에 역서 고준의 중요성이 커진 배경

조선 역서와 중국 역서를 대조·조사하는 작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이 작업과 관련된 기록은 조선 초기인 15세기에도 이미 보인다. 그리고 중국에서 역서를 받아오는 것은 그보다 더 오래 전부터 해왔던 일이다. 그렇다면 아마도 중국 역서와의 고준 작업은 15세기 세종대에 조선에서 자체적으로 역서를 편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시작되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러나 역서 고준 작업이 전에 없던 중요성을 갖게 된 것은 17세기 중엽 이후의 일이었다. 중대한 전환점은 명말청초부터 유럽 예수회 선교사들이 중국의 국가 천문역법 사업에서 큰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들의 참여로 인해 청대(淸代)는 중국 국가 천문역법 사업의 역사에서 매우 뚜렷한 특징 하나를 보여주게 되었다. 명나라 말기부터 진행해오던 대대적인 역법 개정 작업을 수용해서 ‘시헌력법(時憲曆法)’이라는 국가 공식 역법을 선포한 이후에도 역법에 굽직한 수정을 수차례나 가했으며, 그런 수정이 단순히 문화적 취향이나 정치적 선호를 반영한 것이기만 한 게 아니라 기본 개념, 계산법, 데이터 등 천문역산학 면에서도 놀라운 개량을 동반한 것들이었던 것이다.

이런 일은 종래의 왕조에서는 전례가 없었다. 특히 전대인 명대(明代)에는 그 이전 원대(元代)의 수시력법(授時曆法)을 조금 고쳐서 대통력법(大統曆法)으로 선포한 이후에는 왕조 내내 그것을 사용했다. 그런 상황에서는 조선에서도 수시력법-대통력법을 한 번만 제대로 도입하고 소화하면 중국 수준의 역서 제작에 부족함이 없었다. 추가로 큰 노력을 들일 일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 시기에 역서 고준 작업은 정부 차원에서는 그리 긴장된 작업이 아니었다. 단지 내부적으로 담당 관원들의 태만을 감시하고 단속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시헌력법이라는 당시로서는 매우 낯선 역법으로의 개략과, 잇달은 대폭적인 수정들은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중국에서 역법 관련 수정이 있을 때마다 조선에서는 역서 제작에서 낭패를 겪었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수정 사실을 중국에서 조선에 알려줄 이유는 없었다. 조선에서는 스스로 알아서 그런 사실을 알아내고, 필요한 것들은 도입할 방법을 강구해야 했다.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 역서 고준 작업이었다. 역서에 크고 작은 수정이 언제 또 있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매해 고준 작업의 바탕에 긴장감이 깔렸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역서 고준 작업은 전에 없던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던 그 풍랑의 시기는 17세기 중엽부터 18세기 중후반까지 한 세기 이상 이어졌다. 그러나 18세기 말 즈음부터는 그런 일이 드물어졌다. 그와 함께 역서 고준 작업에 감돌던 긴장감도 차츰 누그러졌을 것이다. 본 자료에 실린 보고 기록, 즉 계목들의 작성 시기는 그런 시기가 지나간 뒤인 18세기 말부터 19세기 말까지이다. 본 자료에 실린 계목들의 일반적인 분위기는 시기상의 그런 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2-3. 관상감에서의 역서 고준 작업

이상과 같은 목적과 배경을 가진 역서 고준 작업을 실제로 수행한 것은 역서 편찬의 임무를 맡고 있던 관상감이었다. 그렇다면 관상감 안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했을까? 이에 대해서는 관상감의 관서지(官署志)인 『서운관지(書雲觀志)』(1818)와 삼력청(三曆廳)의 내부 규정들을 모아 놓은 『삼력청완문(三曆廳完文)』(1777)과 『삼력청헌(三曆廳憲)』(1826~1883) 등의 문헌에 실린 관련 규정을 통해 대략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다.

그것에 따르면, 관상감에서는 매년 12월에 두 명의 관원을 지정해서 고준 작업의 실무를 맡겼는데, 그들을 황력고준관(皇曆考準官)이라 불렀다. 고준관은 삼력관(三曆官)들이 자신들 중에서 정하였다. 조선후기에 관상감은 담당 분야에 따라 천문학(天文學), 지리학(地理學), 명과학(命課學), 금루(禁漏) 등의 부문으로 나뉘어 있었고, 각 부문의 관원들은 지위와 임무에 따라 몇 개의 조직 단위(廳)로 나뉘어 있었는데, 천문학 안에서 역서 편찬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단위가 삼력청이었고, 삼력청 소속 관원들이 삼력관이었다. 역서를 편찬하는 일도, 그것을 청나라 역서와 고준하는 일도 삼력청에서 담당하는 일이었다. 해마다 삼력관들 중 24명이 역서를 편찬했으며, 그 다음 해의 24명 중 말관(末官)이나 그 24명에 들지 못한 삼력관들 가운데 두 명이 역서 고준 작업을 수행했다. 이때의 고준 대상은 지난 겨울~봄에 편찬하여 이해 여름~가을에 인쇄한 역서였다.

작업은 역서를 받으러 청나라에 갔던 사신[皇曆齋咨官]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시작했다. 조선에서 올해 편찬·간행한 역서와 청나라에서 지금 막 받아온 역서를 놓고 24기(氣), 합삭·상하현·보름, 사일(社日)·복일(伏日)·납일(臘日), 역주(曆註) 의기(宜忌) 등 주요 사항을 상세히 살펴보고 하나하나 논하는 계목 초고를 작성한다. 그런데 이런 작업을 삼력청 하위 관원들인 이들 황력고준관들이 전적으로 맡아서 했던 것은 아니다. <삼력청헌>에 의하면, 고준할 때 당상(堂上)·임관(任官)·삼력수술관(三曆修述官)들이 모여서 위 사항들을 상세히 고찰하도록 했다. 삼력청의 고위 인사인 당상관들, 운영 책임을 맡고 있는 보직자들, 그리고 작년 역서를 편찬한 관원들 같은 책임 있는 관원들이 고준 결과를 공동으로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공동 검토 후에 그 결과를 계목 초고로 정리하는 일은 고준관들이 했다. 그리고 아마도 공동 검토 자리가 있기 전에 두 역서를 펼쳐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대조하는 밑작업도 고준관들이 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준관들이 관상감 영사(領事)와 제조(提調)들에게 가서 최종 점검을 받은 후 계목을 승정원에 올린다. 본 자료에 수록된 고준 계목들의 제출 날짜는 12월 20일에서 27일 사이다. 역서 고준 작업은 단 며칠 사이에 신속하게 수행해서 그 해 안으로 결과를 보고했던 것을 알 수 있다.

3. 작성자

본 자료에 실린 모든 계목들은 작성 당시 관상감 영사나 제조의 이름으로 제출되었다. 그러나 고준 작업과 계목 작성을 실제로 한 사람들은 당연히 관상감의 관원들이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관상감 삼력관들 중에서 매년 2명씩 임명하는 황력고준관들이었다. 이들이 고준의 실무 전반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며, 계목 초고도 이들이 작성했다. 그 외에 삼력청 고위 관원들도 고준 결과를 공동 검토했으며, 마지막에는 관상감 영사와 제조도 계목 초고 내용을 점검했다.

4. 본 자료의 구성 및 내용

4-1. 자료의 구성

본 자료는 18~19세기에 관상감에서 매해 조선 역서와 중국 역서 간의 동이(同異)를 대조·조사한 결과를 계목(啓目)으로 작성해서 국왕에게 보고하고서 그 내용을 연도별로 옮겨 적어 놓은 등록(騰錄)이다. 수록된 계목은 현재 정조 14년(1790)부터 고종 27년(1890) 사이의 25개 연도에 작성한 것이 비교적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다. 그 밖에 종이가 위아래나 좌우로 잘려서 전체 내용을 알 수 없는 잔편이 여러 조각 남아 있다. 그것들을 잘 수습하면 작성 연도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목의 수는 약간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각 계목의 구성과 양식

계목은 각 관서에서 국왕에게 상주(上奏)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가운데 하나였다. 각 관서나 신하가 정부에 관하여 국왕에게 아뢴 일이 있을 때 대사(大事)에는 계본(啓本)을, 소사(小事)에는 계목을 썼다고 한다. 본 자료에 수록된 기록들은 형식면에서 계목의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먼저 서두에는 “관상감계목(觀象監啓目)”이라고 계목을 올리는 관서의 이름과 문서의 종류를 적었다. 이어 고준 결과에 대해 보고 및 건의하는 내용을 담은 본문을 적고, 말미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云云何如]’라는 말로 문장을 맺었다. 여기서 “관상감계목”의 ‘계목’은 줄을 바꾸고, 한 칸을 높여서 썼다. 임금에게 아뢴다는 의미의 ‘계(啓)’자가 있어서 높이는 뜻을 크게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본문에서도 높여야 할 대상이 있으면 해당 글자 앞에서 한 칸을 띄웠다. 예를 들어 정조 14년(1790) 계목의 경우 “아국(我國)”의 ‘국(國)’자와 “조선(朝鮮)”의 ‘조(朝)’자 앞에서 한 칸을 띄웠다. 그런데 대상을 높이는 방식과 관련해서 한 가지 눈에 띄는 변화가 19세기 말에 청나라를 지칭하는 방식에서 발생했다. 본 자료에 실린 계목들 중 정조 14년(1790)부터 고종 16년(1879)까지의 것들에는 청나라를 가리킬 때 ‘저들’이라는 의미의 “피중(彼中)” 또는 “피(彼)”라는 표현을 썼는데, 고종 23년(1886)과 27년(1890) 계목에서는 “청(淸)”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고, 그 앞의 한 칸을 띄우기까지 한 것이다. 이런 변화는 아마도 1880년대에 들어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지던 상황이 반영된 결과였을 것이다.

이상의 본문에 이어 문서의 뒷부분에는 몇 줄을 띄우고 계목을 올린 날짜와 올린 관원들의 직(職)과 성(姓)을 적었다. 계목을 올린 관원은 영사(領事)나 제조(提調)였다. 다른 많은 관서들에서처럼 관상감에도 본래의 소속 관원들 이외에, 관상감의 일을 감독하는 전현직 고위 관원인 영사와 제조들이 있었다. 영사 또는 영관상감사(領館象監事)는 현직 영의정이 당연직으로 겸임했고, 두 명의 제조는 2품 이상의 전현직 관원들이 맡았다. 관상감에서 국왕에게 올리는 공적인 보고서는 당연히 이들을 거쳐서 이들의 이름으로 올렸다. 본 자료에 실린 계목들은 대부분 영사와 두 제조의 이름으로 올리거나, 영사 없이 두 제조의 이름으로 올렸는데, 드물게는 영사와 한 명의 제조의 이름으로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누구의 이름으로 올리느냐가 반드시 사안 경중을 반영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마지막에는 올린 내용에 대한 임금의 재가, 즉 계하(啓下)를 받았음을 나타내는 ‘계(啓)’자를 썼다. ‘계’자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차이가 일정한 의미를 갖지는 않을 것이다. ‘계’자가 없는 경우라고 해서 임금의 재가를 못 받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자료에 수록된 각 계목의 구성 및 양식은 대체로 이와 같았다.

고준 등록

그러나 본 자료는 고준 결과를 보고한 계목 원본들을 낱장 형태로 모아 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같은 크기의 종이에 옮겨 적고 책자 형태로 묶어 놓은 등록이다. 현재 온전한 책자의 형태가 아니라 그 중 일부가 제본이 풀린 상태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종이들이 반으로 접혀 있고, 그 양쪽에는 책실을 묶었던 다섯 개의 구멍들이 남아 있어서 그것이 원래는 책자 형태의 문서였음을 알 수 있다. 보통 책의 한 면에 한 개의 계목을 옮겨 적었는데, 계목이 길어서 두 면에 걸쳐 옮겨 적은 경우도 간혹 있다.

등록은 조선시대 관서들의 문서 행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였다. 조선시대에는 각 관서에서 소관 업무에 관한 기록이나 다른 관서와 주고받은 문서들을 체계적으로 모아 두도록 했는데, 다음번의 업무 수행을 위한 선례가 되기 때문이었다. 문서를 보존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등록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등록은 일정한 주제 범위의 문서들을 한 군데에 베껴 놓은 것이다. 그것은 시기 순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문서가 작성될 때마다 추가로 적어 넣었다. 등록은 대부분의 관서에서 작성되었는데, 기록을 중시한 조선후기 들어서는 더욱 철저히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관상감의 경우에도 19세기 말에 작성된 몇 가지 등록이 현재 남아 있다. 그 중 『운감등록(雲監謄錄)』 같은 것은 관상감 전반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모아놓은 등록이고, 그 밖에 사안별로 작성된 등록도 몇 가지 있다. 본 자료는 그 중 역서 고준 계목들만을 모아놓은 등록이다.

이 고준 등록에서는 매해의 고준 결과와 보고한 내용 및 보고 양식까지, 고준 계목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역서 고준에 관한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겸 선례집 구실을 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해마다 새로 역서 고준의 실무를 맡게 된 관원은 당연히 이 등록을 열어보고 요긴하게 참고했을 것이다. 실제로 역서 고준 계목들은 이전 계목들의 구성과 문장을 충실하게 답습했고, 어쩌다 문투에 약간의 변동이 생기면 그것을 또 답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준 결과에 대해 판단할 때도 이전 사례들이 중요한 기준이 되었는데, 때로는 그런 판단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전에도 유사한 선례가 많았다’는, 고준 등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한편 등록은 옮겨 적는 과정에서 필사자가 내용을 첨삭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하는데, 본 자료의 경우에는 어떠했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국왕에게 바친 계목 원본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계목 원본으로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한 건이 소장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고종 33년(1892) 작성, 청구기호: 한古朝66-48) 이 계목과 본 자료에 수록된 계목들을 비교해 보면, 서두부터 본문, 제출 날짜와 관원 성(姓)까지의 부분에서는 첨삭했다고 생각할 만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그러기보다는 원본의 내용을 빠짐없이 옮겨 놓은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원본 문장의 이두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이따금 고준 계목의 내용을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에 실을 때는 이두는 빼고 한문 부분만 실었던 데 반해, 관상감 내부의 등록에는 이두까지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그러나 계목 원본에는 제출 관원 성 아래에 수결(手決)이 있고, 이어 계목에서 아뢴 사안에 대한 임금의 재가를 뜻하는 ‘계(啓)’자 인(印)이 찍혀 있으며, 재가한 날짜와 재가했다는 간단한 어구가 찍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본 자료에는 등서되어 있지 않다. 단지 재가 받았다는 의미의 ‘계’자를, ‘계’자 인을 찍는 위치에 적어 넣은 경우가 일부 있을 뿐이다. 결국 등록에 옮겨 적을 때 애초에 관상감에서 작성한 계목 초고[啓草]에 해당하는 부분은 충실히 옮기고, 이후 영사·제조, 승지들에 의해 덧붙여진 부분은 거의 생략했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나중에 참고가 될 만한 부분은 초고까지이고, 그 부분은 계목이라는 문서의 성격상 내용은 물론 양식까지도 훗날의 참고가 되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끝으로 본 자료가 하나의 등록이었다면, 그것에 이름이 있었을 텐데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까? 현재 표지나 첫 장이 남아 있지 않아서 작성 당시에 이 등록이 어떤 이름으로 불렸

는지 직접 확인할 길은 없지만, 문서의 내용을 반영해서 지금 이름을 붙인다면 ‘관상감청향력고준등록(觀象監淸鄉曆考準謄錄)’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식 제목이 아니라, 조선시대에 책 표지에 흔히 적어두던 간이 명칭이라면 ‘청향력고준(淸鄉曆考準)’ 정도이지 않았을까?

4-2. 주요 내용

본문 내용의 구성

본 자료 수록 계목의 본문은 언급하는 내용과 언급 순서 면에서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다. 우선 본문의 첫 줄에서는 한해 역서의 골격이 되는 시간 구획의 주요 사항들이 중국 역서에 실린 것들과 일치하는지에 대해 언급한다. 거기서 언급하는 항목들과 그에 대한 검토 결과는 본 자료에 실린 모든 계목에서 거의 동일하다: “청나라 역서와 우리나라 역서의 월의 대소, 24기, 합삭·현·망, 일출·일몰시각이 거의 모두 서로 맞습니다.” 이 말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큰 달과 작은 달의 배치, 24기에 드는 날짜와 시각, 합삭(合朔)·상현·보름·하현이 되는 날짜와 시각, 일출 시각과 일몰 시각을 기입하는 날짜가 중국 역서에 실린 것들과 잘 부합한다는 것이다.

역서의 골격이 되는 사항들에 큰 문제가 없다는, 거의 투식화된 이런 총괄적인 보고에 이어, 고준 작업을 통해 발견된 서로 어긋나는 점들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그것의 원인을 보고하는데, 원인을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인을 찾아본 결과를 보고한다. 이 본론 부분에서는 대체로 시각이나 날짜 차이 문제를 먼저 거론하고, 역주(曆註) 문제는 그 뒤에 다룬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보고와 검토를 바탕으로 이번에 인쇄·반행한 다음 해 조선 역서에 수정을 가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데, 본 자료에 수록된 모든 계목들에서 그 내용은 ‘모두 우리나라 역서[鄉曆]에 따라 시행하자’는 것이었다.

주요 문제들 및 검토 결과

본문의 본론 부분에서 검토된 두 부류의 문제들 중 더 비중 있게 다루어진 것은 시각·날짜 차이 문제였다. 그런 문제들로는 절기시각, 절기날짜, 합삭·현·망 시각의 차이가 대표적인 것이었다. 그 밖에 일출·일몰 시각을 기입하는 날짜나 사일(社日)·복일(伏日)·토왕용사일(土王用事日) 같은 잡절(雜節) 날짜의 차이도 몇 차례 있었다. 그러나 월의 대소나 합삭 날짜와 같은, ‘날짜’ 결정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는 본 자료 수록 계목들에서는 없었다.

절기시각 문제의 원인으로 제시된 것은 주로 북경과 한양 사이의 경도차였다. 절기날짜는 경도차에 더해, 절기시각이 자정 즈음에 있게 되었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또 여러 문제들에 걸쳐서 자주 제시되는 원인 중에는 역계산 과정에서 작은 단위의 수를 처리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었다. 즉 어느 단위까지 계산할 것인지에 대해 조선 관상감과 중국 흠천감이 다른 관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것이다.

시각·날짜 차이 문제에는 대부분 납득할 만한 원인을 찾아 제시했지만, 때로는 원인을 못 찾은 경우도 몇 차례 있었다. 차이가 생긴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거나, 아무리 다시 계산해 봐도 우리 역관(曆官)들의 계산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그런 경우에 해

당한다. 이렇게 분명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던 경우에도 최종 제안은 언제나 ‘향력대로 하자’는 것이었다. 이미 인쇄해서 발행한 뒤라 아주 중대한 사안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수정하자는 제안을 하기가 매우 조심스러웠을 것이라고 일단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임금에게 진현한 역서를 내와서 고친 뒤에 다시 들이자는 비교적 간단히 실행할 수 있는 조치도 건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원인 미상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꼭 중국 역서가 맞고 조선 역서가 틀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원인 미상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본 자료 수록 계목들에서 보여준 판단과 처리 태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사일이나 복일 날짜와 관련해서는 관상감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청나라 역서와 조선 역서에서 가을의 사일인 추사(秋社)나 말복(末伏)의 날짜가 열흘씩 차이 나는 일이 몇 차례 있었는데, 한 번은 양쪽 다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고, 그 다음엔 중국 역서의 것이 작력식(作曆式)에 어긋난다고 하고, 마지막엔 중국에서 사일 배치하는 법을 바꿨을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가벼운 사안이기는 하지만 19세기에도 중국 함천감에서의 규정 변경을 신속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본론 부분에서 사안별로 검토된 문제들 중 두 번째 부류는 역주 부분의 차이였다. 여기서 말하는 역주는 각 날짜에 붙이는 ‘의(宜)’, ‘불의(不宜)’ 역주다. 이런 문제들은 시각·날짜 차이에 비해 매우 경미하게 취급했다. 양쪽 왕실 기신일(忌辰日)의 차이나, 한양-북경 경도 차로 인한 절기시각의 차이, 충돌하는 두 역주를 조정하는 규정 등 납득할 만한 원인을 짚막하게 제시하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원래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간단히 무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상의 내용은 조선에서의 역서 편찬 규범에 관해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해준다. 조선에서 편찬한 역서와 중국에서 편찬한 역서의 내용이 서로 차이를 보일 때 ‘우리나라 역서[鄉曆]대로 하자’는 결정, 학계에서 ‘본국력(本國曆)의 시행’이라는 이름으로 논의해 오고 있는 이 사건에 관해 잘못 알려진 것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에 관한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이해는, 정조대 끝 무렵인 1790년대 말에 가서야 그런 일이 시작되었고, 정조대에 국한해서 단 몇 차례에 그쳤을 뿐 그 후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본 자료를 통해 새롭게 확인되는 바는 1790년대 말이 아니라 이미 정조 14년(1790), 정조 15년(1791)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전부터 향력에 따라왔다”는 언급이다. 정조 14년(1790)보다 더 전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며, 그 어투는 그것이 특별할 것 없는, 매우 심상한 일이라는 느낌을 담고 있다. 또 ‘향력대로’ 하는 일이 19세기 동안에도 내내 이어져 왔다는 것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생각해오던 것과는 크게 다른 모습이다.

이런 오해가 빚어진 이유는 주로 사료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 동안 ‘본국력’ 논의는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 연대기 자료의 기사에 많이 의존해 왔다. 그런데 이런 자료들은 조선역서-중국역서 간에 심각한 차이가 발생했을 때 주로 기사를 실었을 것이다. ‘중국역서와 일치시킬 필요’가 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기사들이다. 그러나 ‘날짜[曆日]’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 밖의 항목들에 차이가 있었을 때는 어땠을까? 역서의 큰 틀

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선의 계산 결과를 채용해도 무방하지 않았을까? 본 자료에 수록된 정조 14년(1790)~고종 27년(1890)의 계목들은 실제로 그렇게 나왔음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반면 연대기 자료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기사가 거의 없다. 너무 당연하고 일상적인 일이어서 기사거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학계에서는 이런 점을 간과하고 연대기 자료에 기사로 실릴 수 있었던, ‘중국역서[淸曆]대로’ 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들을 18~19세기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확대해석해왔던 것이 아닐까? 기사화될 기회를 갖지 못한, 평범한 해의 역서 고준 결과를 담고 있는 본 자료의 계목들은 이른바 ‘본국력 시행’ 사건의 범위와 나아가 성격까지 재고할 수 있게 해 준다.

4-3 계목별 내용

총괄 보고에서 언급된 항목들

본 자료의 모든 계목들에서 서두의 언급은 거의 동일하다: “청나라 역서와 우리나라 역서의 월의 대소, 24기, 합삭·현·망, 일출·일몰시각이 거의 모두 서로 맞는다.” 시간 구획의 주요 사항들에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다음 다섯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일부 항목을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역서와 차이가 있어서 계목 본문에서 따로 검토된 항목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본 자료에 수록된 모든 계목이 그런 항목을 서두 문장에서 누락시킨 것은 아니다.

일련 번호	계목 제목	언급하지 않은 항목
8	1819년 (순조 19년) 계목	일출·일몰시각
9	1823년 (순조 23년) 계목	합삭·현·망
10	1857년 (철종 8년) 계목	24기
13	1865년 (고종 2년) 계목	24기
15	1867년 (고종 4년) 계목	일출·일몰시각

사안별로 검토된 문제들

일련 번호	계목 제목	발견된 문제들 / 원인 조사 결과
1	1790년 (정조 14년) 계목	1. 춘분날짜 하루 차이 / 경도차 + 자정 전후 2. 하현시각 1분 차이 / 差誤 실마리 없다 3. 역주 차이 / 절기시각 차이 때문이거나 청의 기신 일 때문 4. 역주 有無 차이 / 대단한 일 아니다
2	1791년 (정조 15년) 계목	1. 가을 社日 열흘 차이 / 鄉曆·淸曆 다 맞다

		2. 역주 차이 / 절기시각 차이 때문이거나 청의 기신일 때문
3	1804년 (순조 4년) 계목	1. 역주 차이 / 저들의 기신일 때문 2. 역주 有無 차이, 절기날짜 하루 차이 / 절기시각 차이 때문
4	1805년 (순조 5년) 계목	1. 대서·土王·입춘 날짜 하루 차이 / 절기시각 차이 때문 2. 말복날짜 열흘 차이 / 鄉曆이 작력식에 부합하고 淸曆은 어긋난다 3. 역주 차이 / 청의 기신일 때문
5	1809년 (순조 9년) 계목	1. 5월 합삭시각 차이, 7월 일출·일몰시각 기입날짜 차이 / 원인 못 찾음. 아마도 用法 차이 때문 2. 역주 차이 / 청의 기신일 때문
6	1810년 (순조 10년) 계목	1. 합삭현망 2군데 1분씩 차이 / 작은 단위의 수 처리방식 차이 때문 2. 역주 차이 / 用法 차이 때문 3. 역주 차이 / 청의 기신일 때문
7	1818년 (순조 18년) 계목	1. 역주 有無 차이, 소서날짜 하루 차이 / 用法 차이 때문 2. 5월 일출·일몰시각 기입날짜 차이 / 작은 단위의 수 처리방식 차이 때문 3. 역주 차이 / 청의 기신일 때문
8	1819년 (순조 19년) 계목	1. 역주 차이 / 청의 기신일 때문 2. 1월 일출·일몰시각 기입날짜 차이, 12월 소한 1분 차이 / 작은 단위의 수 처리방식 차이 때문 3. 역주 有無 차이 / 淸曆은 역주 다는 법에 어긋남
9	1823년 (순조 23년) 계목	1. 26군데의 합삭·현·망시각 1~2분씩 차이 / 差誤 실마리 없다 2. 역주 有無 차이 / 淸曆은 역주 다는 법에 어긋남 3. 역주 차이 / 청의 기신일 때문
10	1857년 (철종 8년) 계목	1. 절기시각 2개 1분씩 차이 / 작은 단위의 수 처리방법 차이 때문 2. 역주 차이 / 기신일 차이 때문
11	1863년 (철종 14년) 계목	1. 절기날짜 5개 1분씩 차이 / 작은 단위의 수 처리방법 차이 때문 2. 역주 차이 / 기신일 차이 때문

12	1864년 (고종 1년) 계목	1. 소만시각 1분 차이 / 작은 단위의 수 처리방법 차이 때문 2. 역주 차이 / 기신일 차이 때문
13	1865년 (고종 2년) 계목	1. 9월 土王・10월 입동 날짜 하루 차이 / 경도차 + 자정 전후 2. 역주 차이 / 기신일 차이 때문
14	1866년 (고종 3년) 계목	1. 역주 차이 / 기신일 차이 때문
15	1867년 (고종 4년) 계목	1. 일출・일몰시각 기입날짜 하루 차이 / □度を 만나면 당기거나 늦추는 경우 많다 2. 역주 차이 / 기신일 차이 때문 3. 역주 차이 / 대단한 일 아니다
16	1869년 (고종 6년) 계목	1. 하지・상강 날짜 하루 차이 / 경도차 + 자정 전후 2. 역주 차이 / 대단한 일 아니다
17	1870년 (고종 7년) 계목	1. 절기날짜 2개 하루씩 차이 / 경도차 + 자정 전후 2. ~이 1분 차이 / 작은 단위의 수 처리방법 차이 때문 3. 역주 차이 / 기신일 차이 때문
18	1871년 (고종 8년) 계목	1. 역주 차이 / 기신일 차이 때문
19	1876년 (고종 13년) 계목	1. 망종날짜 하루 차이 / 경도차 + 자정 전후 2. 일출・일몰시각 기입날짜 하루 차이 / 경도차 + 자정 전후 3. 역주 차이 / 망종날짜 차이 때문 4. 역주 차이 / 기신일 차이 때문
20	1879년 (고종 16년) 계목	1. 역주 차이 / 기신일 차이 때문
21	1877년 (고종 14년) 계목	1. 가을 社日 날짜 차이 / 청에서 用法을 바꿨기 때문일 수 있다 2. 역주 차이 / 기신일 차이 때문
22	1886년 (고종 23년) 계목	1. 3월 합삭시각 1분 차이 / 작은 단위의 수 처리방법 차이 때문 2. 한로날짜 하루 차이 / 경도차 + 자정 전후 3. 역주 有無 차이 / 계산 잘못 한 것은 아니다 4. 역주 차이 / 기신일 차이 때문
23	1887년 (고종 24년) 계목	1. 역주 有無 차이 / 계산 잘못 한 것은 아니다 2. 절기날짜 3개 하루씩 차이 / 경도차 + 자정 전후 3. 11월 하현시각 1분 차이 / 작은 단위의 수 처리방

		법 차이 때문 4. 역주 차이 / 기신일 차이 때문
24	1888년 (고종 25년) 계목	1. 역주 有無 차이 / 계산 잘못 한 것은 아니다 2. 역주 차이 / 기신일 차이 때문
25	1890년 (고종 27년) 계목	1. 절기날짜 3개 하루씩 차이 / 경도차 + 자정 전후 2. 말복날짜 열흘 차이 / 鄉曆이 작력식에 부합하고 淸曆은 어긋난다 3. 절기시각 3개 1분씩 차이 / 작은 단위의 수 처리 방법 차이 때문 4. 역주 차이 / 기신일 차이 때문

5. 본 자료의 자료적 가치

5-1 자료의 진위

계목 작성자

본 자료는 18~19세기 관상감 관원들이 작성한 문서임이 분명해 보인다. 무엇보다도 그 내용이 고준 작업을 실제로 수행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은 실제의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몇몇 연도의 계목 내용을 현존하는 해당 연도의 역서를 통해 확인해 보니 정확히 일치했다. 또 계목에 서명한 제조의 성(姓)도 연대기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았다. 이런 검증 작업을 다른 연도로도 확장해 보면 이 등록 내용의 사실 부합성이 더욱 분명해지리라 생각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청나라 역서와 조선 역서를 갖추어 놓고서 대조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 수시로 바뀌는 제조가 당시에 누구였는지 아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본 자료의 계목들이 관상감에서 각 해당 시기에 작성한 것임이 분명해 보이는 이유다.

등록 작성 시기

다음으로 계목을 등서(謄書)한 시기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이 등록은 적어도 여러 계목들을 모아서 나중에 한꺼번에 옮겨 썼거나, 이전의 등록을 다시 베껴 쓴 것은 아닐 것이다. 계목들이 한 사람의 필체로 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본 자료에 현재 남아 있는 계목들 중 정조 14년(1790)~순조 9년(1819)에 해당하는 앞 시기의 것들은 필체가 일정해 보이기도 한다. 어쩌면 이 시기의 것들은 한꺼번에 옮겨 썼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철종 14년(1863) 이후의 것들은 필체가 자주 바뀐다. 적어도 이 시기 이후의 것들은 각 계목이 작성되던 시점에 그때그때 등서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또 등서 과정에 대해 자세한 것을 알 수 없기는 하지만, 만약 이 고준 계목의 등서 작업을 황령고준관이 아니라 관상감 안의 글씨 잘 쓰는 사람에게 맡겼다면, 계목을 그때그때 등서했더라도 여러 해에 걸쳐서 같은 필체가 이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정조 14년(1790)~순조 9년(1819) 계목의 일정해 보이는

필체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이상의 추론과 사실들을 종합하면 본 자료가 18~19세기 당시에 작성되고 등서된 문서임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5-2 자료의 가치

본 자료는 조선시대 역서 편찬 활동의 독특한 일면을 이루고 있던 역서 고준 작업에 관한 1차 자료다. 역서 고준 결과는 연대기 자료나 <서운관지> 등에도 몇 건 실려 있지만 그것은 그럴 만한 일이 있을 때, 필요한 대목만을 실은 것이기 쉽다. 반면 본 자료는 그런 선별·발췌를 거치지 않은 원자료에 해당한다. 과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의도와 필요에 따른 처리를 거치지 않은 원자료가 갖는 가치는 두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한 본 자료는 백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작성된 기록이다. 등록 작성을 위한 저본에 해당하는 계목 원본이 현재 한 부 남아 있기는 하지만(고종 33년(1892) 작성,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한古朝66-48), 그것은 한해의 기록에 그친다는 아쉬움이 있다. 반면 본 자료는 작성 기간 중 1/5 남짓한 21개 연도의 기록이 현재 수습되고 있지만, 그것이 단회의 기록을 넘어서는 가치를 갖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본 자료는 조선후기 역서 고준 작업 안팎의 여러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역서 고준 작업 자체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게 해준다. 기본적으로 역서 고준 작업을 실제로 규정대로 해마다 수행했으며, 연대기 자료에서 관련 기록이 급감한 19세기에도 꾸준히 수행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역서 고준 작업의 실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준다. 본 자료는 역서 고준에서 어떤 사항들이 검토 대상이었는지, 각 연도에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중국 역서와의 어떤 차이가 발견되고 보고되었는지, 발견된 문제들에 부여한 비중은 어떠했는지, 조사 결과에 대한 판단은 어떠했는지에 대해 가공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또 백년이라는 긴 기간을 거치며 그런 사항들에 변동은 없었는지도 살펴볼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나아가 본 자료는 역서 고준 작업과 관련된 더 넓은 범위의 질문들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역서 편찬을 위한 계산 과정에서 어떤 방법을 쓰고 있었고 어떤 관행을 가지고 있었는지, 역주를 배치할 때는 어떤 규정에 따랐는지 같은 문제를 조사할 때 유용한 일차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중국 역서와의 일치 문제에 대한 조선 정부의 태도나, 조선 천문관서의 역계산 능력에 대해 알아보려 할 때에도 요긴하게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자료는 독자나 연구자의 관심사에 따라 조선시대 관상감 또는 천문학의 역사와 관련한 그 밖의 다양한 질문들에,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도 열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자료가 관상감 내부 문서로서 가지는 가치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통 시대의 대표적인 천문관서, 또는 음양학 관서로서 관상감은 역사학적으로 큰 관심을 받기에 충분하지만, 그것에 관해 알 수 있게 해주는 자료는 현재 그리 풍부하게 남아있지 않다. 관상감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내부 참고용으로 작성한 문서들은 보존 상황이 더욱 열악하다. 그런 상황에서 특정한 하나의 사안에 관해 작성해 놓은 등록인 본 자료는 자료의

공백을 다소나마 메워줄 귀한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6. 키워드

관상감(觀象監), 계목(啓目), 관상감계목(觀象監啓目), 고준등록(考準曆錄), 역서(曆書), 청력(淸曆), 청서(淸書), 황력(皇曆), 향력(鄉曆), 향서(鄉書), 청력(淸曆)과의 대조, 청향력고준(淸鄉曆考準), 청향서고준(淸鄉書考準), 황력고준(皇曆考準), 황력고준관(皇曆考準官), 대소월(大小月), 이십사기(二十四氣), 합삭현망(合朔弦望), 일출입시각(日出入時刻), 절기조만(節氣朝晩), 야자(夜子), 주자(晝子), 사일(社日), 복일(伏日), 치사지법(置社之法), 치복지법(置伏之法), 역주(曆註), 작력식(作曆式), 기신일(忌辰日)

명 시 력

大韓光武六年歲次壬寅明時曆 해제

1. 개요

본 자료는 대한제국 광무 6년(1902)의 상용력인 『대한광무육년세차임인명시력(大韓光武六年歲次壬寅明時曆)』의 일부로, 전체 15개의 장 중 현재 6장만 남아 있다. 그러나 동일한 장이 9장이나 남아 있어 그 의미가 주목된다.

2. 조선시대 역서의 변천과 명시력

조선시대에 정부에서 편찬하던 역서(曆書)들은 언뜻 보기에는 발행 시기와 무관하게 다들 서로 비슷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역서의 내용에서는 주목할 만한 큰 변화가 몇 차례 있었다. 명시력은 그런 변화의 마지막 국면의 한 산물이었다.

첫 번째 변화는 조선 초 세종대에 역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한 데서 말미암았다. 이때 중국 원대(元代)의 수시력법(授時曆法)과 그것을 이은 명대(明代)의 대통력법(大統曆法)을 도입해서 칠정산내편법(七政算內篇法)을 완성했는데, 이것은 동시대 중국 최고 수준의 역법 지식을 온전히 흡수한 것이었다. 역법의 내용과 운용 능력에서의 이런 큰 폭의 변화가 역서의 변화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이때를 전후한 시기의 역서 실물이 남아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아마도 역(曆)의 정확성이 크게 향상되었을 것이다. 어쩌면 이때 역서 수록 항목도 송원대(宋元代) 중국 관방(官方) 역서의 체제를 온전하게 구현하는 수준으로 늘었을 수 있다.

조선시대 역서에서 두 번째 변화는 조선 중엽에 시헌력법을 도입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중국에서는 명·청 교체기를 전후한 수십 년에 걸쳐서 유럽 천문학의 성과들을 대거 수용해서 천문·역법을 개정했다. 시헌력법으로의 개력(改曆)은 그 대표적인 성과였다. 조선에서도 장기간의 노력을 통해 시헌력법을 들여와서 운용했다. 역서의 기본 체제는 이전 것을 고수했지만, 역의 정확성과 내용에는 또 한 차례 큰 변화가 있었으며, 그에 따라 윤달이나 24절기의 배치 등 세부 항목도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를 겪었다.

조선 말기인 1900년 무렵에 또 한 차례의 변화가 있었다. 이번에는 천문역산학 지식의 교체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중국과의 특수한 의존관계에서 벗어나고, 근대적인 개혁을 통해 부강(富強)을 추구한다는 정치적인 지향이 주요 배경이었다. 변화는 두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하나는 태양력 요소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태음태양력이지만 음력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상용력(常用曆)에 서양식 태양력 요소를 약간 첨가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명시력(明時曆)이었다. 그와 동시에 태음태양력 요소를 일부 실은 양력 날짜 기준의 역서도 따로 펴냈다. 간단히 ‘대한광무일년력(大韓光武一年曆)’ 등으로 불리던 역서였다. 전통적으로 써온 태음태양력을 근본으로 하되 서양식 태양력을 함께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여러 나라와의 교류를 원활하게 매개하기 위해 공통의 날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구본신참(舊本新參)이라는 대한제국의 국가 운영 기조 위에서 수용한 것이었다.

이 시기 역서 변화의 또 한 측면은 역서에서 중국 황제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었다. 우선 역서의 얼굴이 되는 첫 장의 역서 이름에서 그런 작업을 진행했고, 역서 본문에는 조선 왕실이나 국가의 의례·경축일에 관한 내용을 실기 시작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전통적으로 중국과 조선에서 역서는 군주의 권위를 나타내는 두드러진 상징 중 하나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중국 일변도의 외교를 벗어나려 하던 갑오개혁-광무개혁에서 이런 개정을 시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런 개정 조치들을 통해 대한제국기에 역서는 그야말로 ‘눈에 띄는’ 변화를 겪었다. 역서

의 얼굴이 바뀌고, 왕실·국가의 존재를 드러내는 항목들이 지면에 배치되기 시작했으며, 전에 없던 순태양력(純太陽曆)의 부상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변화를 위해 새로운 역법을 도입하거나 개발해야 할 필요는 없었다. 이 시기의 변화는 천문역산학 면에서는 전혀 새로운 작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3. 명시력의 체제·내용상의 특징

조선시대에 역서의 체제, 즉 수록 항목 및 지면 배치는 좀처럼 바뀌지 않았다. 서양 천문학 요소들을 대거 수용한 시헌력법을 도입하면서도 이전 대통력 때의 체제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런 지속성은 기본적으로 시헌력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명시력에서도 뚜렷했다. 그러나 명시력에서는 역서의 외형과 수록 항목 면에서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전에 없던 두드러진 변화가 도입되기도 했다.

먼저 역서의 이름을 크게 바꾸었다. 역서 이름에서 중국의 국명 ‘대청(大清)’과 중국황제의 연호(年號) ‘광서(光緒)’를 내리고 그 자리에 자체의 국명(‘대조선(大朝鮮)’ 또는 ‘대한(大韓)’)과 연호(‘건양(建陽)’ 또는 ‘광무(光武)’를 올렸다. 또 중국 건륭제(재위 1735년~1796년)의 이름 글자를 피하기 위해 역서 이름을 ‘시헌력(時憲曆)’에서 ‘시헌서(時憲書)’로 바꾸어 써왔던 것을 원래의 이름으로 되돌리고, 나아가 ‘명시력(明時曆)’이라는 자체의 역서 이름을 지어서 쓰기 시작했다. 앞에서 말한 탈-중국의 정치적 지향 속에서 나온 과감한 개정들이었다.

역서 본문 각 면의 상단에는 왕실이나 국가의 의례·기념일을 표시하는 두주(頭註)를 신기 시작했다. 그 대상에는 왕실 역대 주요 인물들의 탄신일·기신일(忌辰日) 같은 왕실의례 날짜나, 환구기곡대제(圜丘祈穀大祭)·미기성제(尾箕星祭) 같은 국가제사 날짜, 개국기원절(開國紀元節) 같은 국가경축일 등이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본 자료의 8월장에 수록된 두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이는 자국 왕실·국가의 주요 행사일을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보는 역서에 적어 넣음으로써 전국민적인 행사·경축일로 끌어올리려는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조치는 겉보기만으로는 중국의 것과 구분할 수 없도록 똑같은 모양으로 역서를 만들려고 했던 이전의 태도와는 매우 다른 것이었다.

산천단삼각목역산한강역대시조제월내(山川壇三角木覓山漢江歷代始祖祭月內), 조경묘제향상순내(肇慶廟祭享上旬內), 사직대제(社稷大祭), 순원숙황후기신(純元肅皇后忌辰), 문조익황제탄신(文祖翼皇帝誕辰), 문묘석전제(文廟釋奠祭), 계성사제(啓聖祠祭), 신덕고황후기신(神德高皇后忌辰), 인현왕후기신(仁顯王后忌辰), 종묘곡궁각능원제향(宗廟穀宮各陵園祭享), 숙종대왕탄신(肅宗大王誕辰), 현종대왕기신(顯宗大王忌辰), 명성황후기신(明成皇后忌辰), 정현왕후기신(貞顯王后忌辰), 각묘궁제(各廟宮祭), 효현왕후기신(孝顯王后忌辰), 장렬왕후기신(莊烈王后忌辰), 사현사제(四賢祠祭)

또 본문 각 면의 하단에는 날짜마다 그에 상응하는 양력 날짜와 요일을 적어 넣기 시작했다. 음력 중심의 상용력을 가지고도 양력 날짜를 알 수 있게 한 장치였다.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음력과 양력을 병용한다는 대한제국 시기의 독특한 이중력 체제는, 해마다 음력 중심의 ‘명시력’과 양력 중심의 ‘력’을 함께 펴내는 한편 공식 역서인 음력 중심의 명시력 안에 도 서양식 양력의 주요 요소를 수록하도록 했던 것이다.

4. 편찬자

본 자료의 편찬자들은 광무 5년(1901) 당시의 관상소장(觀象所長) 이돈수(李敦修) 이하의 관상소(觀象所) 소속 관원들이다. 이는 『대한광무육년세차임인명시력』의 말장(末張)에 실린 편찬자 명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역서의 편찬·간행은 전적으로 정부 기관에 의해 이루어졌다. 담당 기관은 고려 말 이래 서운관(書雲觀) 또는 그 후신인 관상감(觀象監)이었다. 역서 편찬을 비롯한 관상감의 임무와 편제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런데 19세기 말 갑오개혁과 광무개혁을 거치면서 전에 없던 질적인 변화를 겪었다. 정부 조직 전반을 근대적인 방향으로 재편하려는 대대적인 관제 개혁의 대상에 관상감도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의 관상감 제도 개편은 방향과 속도 면에서 안정적이고 일관된 것은 아니었다. 급변하는 정치 상황에 영향 받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변화의 굴곡은 관서 이름의 교체에서부터 드러난다. 원래 ‘관상감’이었던 것이 고종 35년(1894)에 관상국(觀象局)으로, 고종 36년(1895)에는 다시 관상소(觀象所)로 바뀌었다. 소속도 예조(禮曹)에서 학무아문(學務衙門)으로, 다시 학부(學部)로 바뀌었다. 본 자료를 편찬하던 광무 5년(1901)년에 그것은 학부 관상소였다.

더 중요하게는, 관서의 편제와 임무가 조정되었다. 음양학(陰陽學)이라는 이름으로 관상감 안에 같이 설치되어 있던 여러 업무들을 어떻게 할지가 검토되고, 그 중 일부는 폐지되거나 한때 다른 관서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남은 조직의 규모는 전체적으로 축소되었다. 대한제국 시기 동안 인원이 다시 늘기는 했지만 완전히 복구되지는 않았다. 이런 변화는 매해 역서 편찬 참여 관원 수의 감소와 회복에도 반영되었다. 본 자료를 편찬하던 시기에 관상소는 근대적인 개편의 와중에서 혼란스러운 변화를 겪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5. 본 자료의 내용 및 자료적 가치

본 자료는 대한제국 광무 6년(1902) 명시력의 일부로, 이 해의 역서를 구성하는 15개의 장(張)들 중 현재 여섯 달에 해당하는 장들이 남아 있다. 남아 있는 부분은 5~8월장, 10~11월장이다. 잔편이기는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명시력의 특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조선 후기 시헌력의 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각 월 장의 윗부분에는 왕실 및 국가의 의례·기념일에 관한 정보를 담은 두주를, 아랫부분에는 매일의 양력 날짜와 요일 정보를 담은 미주를 추가로 실었다. 판심제(版心題)는 ‘임인년(壬寅年)’이다. 본 자료는 현재 한 장씩 낱장으로 있거나, 두 장을 위아래로 이어 붙여 놓았거나, 두 장 이상을 면대면으로 겹쳐서 붙여 놓은 상태이다. 본 자료가 발견된 병풍을 만들 때 배접지로 쓰기 위해 이리저리 이어 붙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광무 6년 명시력은 적지 않은 부수가 현재 전해지고 있다. (아래의 표는 주요 도서관에 소장중인 광무 6년 명시력의 몇 가지 예이다.) 게다가 본 자료는 완본이 아니라 역서 전체의 40% 정도만 남은 잔편이다. 이런 점들은 본 자료의 자료적 가치를 제한된 것으로 만든다.

서명, 소장처, 청구기호

明時曆

(內題는 大韓光武六年歲次壬寅明時曆),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一簣 古 529.3-G994m

大韓光武年曆,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3-737-1

大韓光武六年歲次明時曆, 국립중앙도서관, 일산古734-60

그러나 본 자료에는 한 가지 매우 특이한 점이 있다. 같은 달의 장이 한 장씩만 있는 것이 아니라 2장, 3장, 4장, 심지어 9장까지 있다는 사실이다. (본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각 월(月) 장의 장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여러 장이라고 해서 서로 연도가 다른 것은 아니다. 본 자료의 문서들은 모두 광무 6년(1902)년 명시력을 구성하는 장들이고, 각 월의 장들은 분명히 동일한 목판의 인쇄물이다.

내용,5월장,6월장,7월장,8월장,10월장,11월장

장수 (장),2,3,4,9,3,3

본 자료가 배접지로 들어있던 병풍을 만들 때 같은 해 역서의 같은 달 장을 많게는 9장이 나 쓴 것인데, 이런 일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니다. 혹시 서로 다른 해, 다른 달의 장들이라면 수년 간 쓰고 모아둔 역서들에서 떼어 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 같은 해, 같은 달의 장이라도 두어 장 정도라면 배접할 종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같은 해의 역서를 두어 부 구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장수가 9장이나 되면, 그것을 그저 우연히 손에 넣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어떤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었을까?

동년 동월 장을 9장씩이나 가지게 되는 일은 역서를 구입하거나 선물 받아서 쓰는 일반적인 역서 이용자에게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은 본 자료가 일반적인 역서 유통 경로를 통해 일반에게 배포된 역서가 아니라 역서 제작처 관계자가 가지고 있었거나 처분한 문서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된다. 나아가 다 쓴 책력에서 떼어낸 종인들이 아니라, 짝을 맞춰서 책력으로 묶고 남은, 각 월별 낱장 형태의 인쇄물들이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 흔히 책력을 개인 일지나 메모장으로 썼던 관례와는 달리 본 자료는 붓을 댄 흔적이 전혀 없이 깨끗하다는 점도 그것이 책력으로 묶이지 않은 채 인쇄처에 남아 있던 장들이었을 가능성을 높여 준다.

본 자료가 관상소-인쇄처 관계자에게서 나온 것일 가능성은 그것과 함께 발견된 자료들의 성격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본 자료와 함께 발견된 자료들 중예고종 32년(1895) 역서의 연신방위도가 있는데, 이것도 본 자료처럼 같은 장이 여러 장 있다. 그 수가 무려 17장이고, 잔편들까지 합하면 20장이 넘어간다. 일반적인 역서 이용자가 다 쓴 역서에서 떼어낸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다. 또 궁중 전용의 어용 역서인 내용삼력(內用三曆)도 함께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궐내 고위 인사나 관상소-인쇄처 관계자 등 극히 제한된 사람들만이 손에 넣을 수 있는 물건이었다. 결정적으로 관상감에서 내부 보관용으로 작성한 관상감계목 등록이 함께 있었다. 이것은 관상감-관상소 관계자가 아니고서는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문서다. 이상의 네 가지 자료가 한 군데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그것들이 조선시대의 천문역산 기관인 관상감-관상소에서 직접 흘러나온 한 무더기의 문서일 가능성을 매우 높여 준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관상감-관상소 내부 기록이 흩어지고 유실되어 제대로 남아 있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5. 키워드

명시력(明時曆), 광무육년(光武六年), 임인년(壬寅年), 왕실의례일(王室儀禮日), 국가기념일(國家記念日), 양력(陽曆) 날짜, 요일(曜日), 대한제국(大韓帝國), 광무개혁(光武改革), 관상소(觀象所), 이돈수(李敦修)

삼 력

大韓光武九年歲次乙巳內用三曆 해제

1. 개요

본 자료는 대한제국기인 광무(光武) 9년(1905)에 관상소(觀象所)에서 편찬·인쇄한 어용(御用) 역서인 『대한광무구년세차을사내용삼력(大韓光武九年歲次乙巳內用三曆)』의 일부로, 전체 역면(曆面) 중 현재 22장 정도가 남아 있다.

2. 내용삼력이라는 역서

조선시대에 역서 제작은 국가의 독점적인 사업이었다. 역서 제작이 제왕의 통치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의 하나로 간주되는 정치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역서 제작은 정부의 철저한 통제 속에서 관(官)에 의해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민간에서는 스스로 역서를 편찬하는 일은 물론 관에서 발행한 역서를 그대로 다시 새겨서 찍어내는 일도 해서는 안 되었다. 물론 관에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부수의 역서를 찍어서 배포했지만, 그 역서의 내용은 언제나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편찬하는 역서가 딱 한 가지였던 것은 아니다. 담당 기관인 관상감(觀象監)에서 편찬하는 역서들은 의외로 다양했다. 조선 전기에 이미 최소한 세 가지 이상의 역서가 편찬되고 있었다. 조선 후기가 되면 더 다양해져서, 18세기 말 즈음에는 세 분해서 본다면 10가지 정도의 역서가 편찬되고 있었다. 그 역서들은 내용과 쓰임새가 서로 달랐다.

그 중 일상적으로 널리 쓰는 상용력(常用曆)은 어느 한 해의 역(曆) 정보만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연력(年曆)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한 해가 아닌 여러 해의 역 정보를 수록한 역서들도 제작되고 있었다.

또 상용력은 년·월·일의 구획과 절기·행사일, 각종 길흉 정보 등을 위주로 한, 그날그날의 일상 대소사를 처리하는 데 쓰는 역서라는 의미로 일과(日課)라고 불렸다. 그러나 이와 대비되는, 해·달·수성·금성·화성·목성·토성 등 천체들의 위치 정보를 담은 일종의 천체력(ephemeris)인 칠정력(七政曆)도 편찬되고 있었다.

한편 조선후기에 상용력은 당시의 기본 역법인 시헌력법(時憲曆法)을 써서 편찬되었다. 그러나 관상감에서는 개력(改曆) 전에 쓰던 대통력법(大統曆法)을 가지고도 비슷한 역서들을 편찬하고 있었다.

결국 조선후기의 상용력은 시헌-일과-연력이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것 이외에도 내용과 용도 면에서 성격이 다른 역서들이 여러 종 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부수 면에서는 상용력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특수한 용도를 위해, 소량만 제작되는 역서들도 다양하게 편찬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같은 시헌-일과-연력 중에도 반행(頒行)하여 널리 쓰이는 것과는 다른, 특수한 목적을 위해 별도로 제작되는 역서가 있었다. 바로 내용삼력(內用三曆)이다. 내용삼력은 수록 기간과 항목, 역법 면에서 일반 상용력과 거의 같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내용삼력은 제한된 사용자를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민간에는 배포하지 않았다. 대궐에만 바쳤다. 대궐 안에서도 왕이 있는 대전(大殿)과, 대비와 왕비가 있는 각 내전(內殿), 세자가 있는 세자궁(世子宮)에만 1건씩 바쳤을 뿐, 빈(嬪)이나 세자빈(世子嬪)이 있는 각 빈궁(嬪宮) 이하에는 바치지 않았다. 내용삼력은 왕과 세자 급의 왕실 고위 인사 전용의 역서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내용삼력(內用三曆)’의 ‘내용(內用)’은 대내(大內) 즉 대궐 안에서 쓰는 역서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었다. 궐 밖의 사람들 중에도 관상감의 일을 감

독하는 책임을 맡고 있던 영사(領事)와 제조(提調)들이 내용삼력을 1건씩 받았지만, 그것은 정식 배포가 아닌 봉여(封餘)¹⁾ 차원의 일이었다. 그 밖에는 관상감에 업무용으로 한두 부 남겨두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그것이 전부였다.

내용삼력이 대내(大內) 전용이었던 것은 그것의 체제 및 내용상의 특징과도 관련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살펴본다.

3. 내용삼력의 체제 · 내용상의 특징

내용삼력은 수록 항목이나 체제 면에서 일반 상용력과 대동소이했으나, 몇 가지 점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먼저 지면 배치에서 몇 가지 차이를 볼 수 있다. 상용력에서는 각종 길흉 신살(神煞)들의 소재(所在) 정보를 역서 맨 뒤의 두 면에 모아서 실은 반면 내용삼력에서는 역서 앞부분에 한 면, 뒷부분에 두 면, 이렇게 모두 세 면에 나누어서 실었다. 역서의 지면 자체가 상용력보다 큰데다가 할당된 면수도 이처럼 더 많아서 전체적으로 신살들의 배치가 여유 있고, 따라서 신살들의 위치를 찾기가 조금 더 용이하다. 한편 연신방위도(年神方位圖)는 상용력과 달리 두 면이 아니라 한 면에 그려져 있는데, 내용삼력의 지면이 더 큰 것을 고려하면 두 도표의 실제 크기에는 큰 차이가 없다.

지면 배치상의 소소한 차이보다 더 중요한 차이는 날짜별로 기입하는 매일의 역주, 즉 일주(日註)의 내용에 있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상용력에는 날짜별로 의(宜)와 불의(不宜), 즉 ‘그날 하기에 적당한 일들’과 ‘그날 하면 안 좋은 일들’을 실었다. 그런데 내용삼력의 경우에는 의(宜) 항목을 상(上) · 임(壬) · 하(下)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 각각에 서로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역주를 칸(間)을 바꾸어가며 실었다.

그 중 하간(下間)에는 그해 상용력의 의(宜) 역주를 거의 그대로 실었다. 반면 상간(上間)에는 국왕을 위한 역주를 실었다. 같은 날에 대한 상간 역주와 하간 역주는 상당 부분이 서로 일치한다. 그러나 그 밖의 상당수의 항목들은 내용 면에서는 서로 통하지만 표현은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하간에 있는 ‘출행(出行)’에 대응하는 상간의 역주는 ‘행행(行幸)’ · ‘견사(遣使)’ · ‘출사(出師)’ 등이다. ‘밖으로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지만, 앞의 것이 신분에 구애 없이 누구에게나 쓸 수 있는 말인데 반해, 뒤의 것들은 국왕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가리키는 용어들이다. 상간의 역주는 국왕에게 필요한, 그리고 국왕만을 위한 역주였던 것이다.

한편 임간(壬間)에 실은 역주는 세자궁(또는 원자궁)에서의 의기(宜忌) 선택을 위한 것이었다. 임간에는 상간의 거의 모든 역주들이 다 실려 있지만, 거의 언제나 상간보다 많은 역주들을 실은 것으로 보아 역주를 수용하는 범위가 상간에 비해 더 넓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전하는 내용삼력들 중에는 반대로 임간이 아예 비워져 있는 것들도 다수 있는데, 이는 세자가 없는 시기에는 세자를 위한 임간 역주를 실지 않는 것이 규정이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원자(元子)가 태어나거나 원자 책봉이 있을 때에는 한 해의 중간에라도 임간의 역주 정보를 보충하려 했다. 또 세자가 죽었을 때에도 임간을 비우는 것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결국 내용삼력은 국왕 전용의 역주와 세자 전용의 역주, 그리고 모든 신민(臣民)에게 두루 쓰이는 역주, 이 세 가지를 함께 실은 역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상간 · 임간 · 하간에 이어 칸을 바꾸어서 실은 불의(不宜) 역주는 국왕 · 세자 · 신민에게 해당하는 불의 역주들을 한데 모아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세 층의 사용자를 위한 역주들을 실었다는 것이 내용삼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으며, ‘삼력(三曆)’이라는 이름도 이런 데서 말미암은 것이었다.

1) 봉여(封餘): 임금에게 바치고 남은 물건을 관련 관원들이 나누어 가지는 일.

또 관상감에서 역서 편찬에 참여하는 관원들을 ‘삼력관(三曆官)’이라고 한 것도 귀한 어용(御用) 역서인 내용삼력을 만드는 관원이라는 뜻을 담은 것이었다.

4. 대한제국 시기의 내용삼력

현재 실물로 남아 있는 내용삼력은 18세기에서 20세기 초의 것들이다. 그것들을 통해 이 시기 동안 내용삼력의 체제와 내용은 별다른 변화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역서 이름이나 편찬 담당 기관 등 외적인 측면에는 몇 번의 작은 변화가 있었다. 본 자료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 편찬되었다.

‘내용삼력(內用三曆)’이라는 이름과 그것의 편찬 작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관상감에서 ‘삼력(三曆)’을 편찬했다는 사실은 이미 15세기의 기록에서 확인된다. ‘삼력’은 ‘내용삼력’을 줄여서 흔히 부르던 이름이었다. 그런데 이 본래의 이름이 18세기 중엽에 ‘내용삼서(內用三書)’로 변경되었다. 1735년에 즉위한 청(淸)의 황제 건륭(乾隆)의 이름이 ‘홍력(弘曆)’이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조선에서도 공식 문서에서 ‘홍력’의 ‘력(曆)’자를 피하기 시작했는데, 그 일환으로 상용력의 이름 ‘시헌력(時憲曆)’을 ‘시헌서(時憲書)’로 바꾸었고 아마도 내용삼력도 이때 함께 바꾸었을 것이다. 그 후 한 세기 반 가까이 ‘내용삼서’ 또는 줄여서 ‘삼서(三書)’라는 이름이 널리 쓰였다. 그러다가 고종 36년(1895) 무렵 다시 원래의 이름 ‘내용삼력’으로 되돌아온다.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하던 갑오개혁(甲午改革)의 일환이었다.

갑오개혁과 대한제국 선포를 거치면서는 내용삼력 이름의 기년(紀年) 부분도 바뀌었다. 중국의 국명(國名)과 연호(年號)를 쓰던 방식에서 자체의 국명과 연호를 쓰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예를 들어 고종 29년(1892)에는 ‘대청광서십팔년세차임진내용삼서(大清光緒十八年歲次壬辰內用三書)’라고 하던 것에 대한제국 시기인 광무 9년(1905)에는 ‘대한광무구년세차을사내용삼력(大韓光武九年歲次乙巳內用三曆)’이라는 이름을 주었다. 본 자료의 이 이름은 이런 배경에서 정해진 것이었다.

한편 갑오개혁과 대한제국 선포를 거치면서는 내용삼력을 편찬하는 기관도 개편되었다. 오랫동안 역서 편찬을 담당해오던 관상감이 고종 35년(1894)에 관상국(觀象局)으로, 고종 36년(1895)에는 다시 관상소(觀象所)로 이름이 바뀌고, 조직도 개편되었다. 소속도 예조(禮曹)에서 학무아문(學務衙門)으로, 다시 학부(學部)로 바뀌었다. 그 결과 본 자료를 편찬하던 때의 담당 기관은 학부 관상소가 되었다.

5. 본 자료의 내용 및 자료적 가치

본 자료는 대한제국 광무 9년(1905) 내용삼력의 일부이다. 현재 22장 이상이 남아 있는데, 두 장 이상이 겹쳐서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 겹쳐 붙어 있지 않은 낱장이 2장, 겹쳐진 것이 10장이어서 적어도 22장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겹쳐 붙은 것들 중에는 3장 이상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총 장수는 22장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판심제(版心題)는 ‘을사년삼력(乙巳年三曆)’이다.

내용삼력은 본래 대내(大內) 용으로 소량만 제작되었기 때문에 일반 상용력에 비해 남아 있는 양이 매우 적다. 본 자료는 내용삼력이 제작되던 최말년에 그것이 어떤 내용으로 편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는 귀한 자료이다. 그러나 완본이 아닌 일부만 남은 잔편이어서 자료적 가치는 약간 제한적이다. 완전한 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한 부가 보존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책명: ‘대한광무구년세차을사내용삼력(大韓光武九年歲次乙巳內用三曆)’, 청구기호: 가람古 529.3-G994d.)

그러나 본 자료가 단독으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성격이 유사하지 않은 다른 자료들과 같은

곳에서 함께 발견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주목을 끈다. 동일한 역서의 동일한 면을 찍은 문서들이 다량으로 있는 데다, 관상감의 내부 문서까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자료들은 일반적인 역서 이용자의 유물이 아니라 관상감 관계자가 가지고 있던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되는데, 일반인은 구해 보기 어려운 내용삼력이 그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 그런 추측에 무게를 더해준다. 나아가 이 네 자료가 한군데서 발견되었다는 점이 이 자료들의 그런 점을 서로 보강해 준다고 생각된다.

5. 키워드

내용삼력(內用三曆), 내용(內用), 삼력(三曆), 내용삼서(內用三書), 삼서(三書), 어용(御用), 상용력(常用曆), 시헌(時憲), 일과(日課), 연력(年曆), 상임하(上壬下), 상간역주(上間曆註), 임간역주(壬間曆註), 하간역주(下間曆註), 의불의(宜不宜), 광무구년(光武九年), 관상소(觀象所)

연신방위지도

年神方位圖 해제

1. 개요

본 자료는 고종 32년(1895)의 역서인 『대조선개국오백사년세차을미시헌서(大朝鮮開國五百四年歲次乙未時憲書)』의 일부로 수록되기 위해 인쇄된 연신방위도(年神方位圖)이다. 같은 해의 동일한 연신방위도가 20장 가까이 남아 있어서 그 의미가 주목된다.

2. 조선시대의 상용력과 연신방위도

조선시대에 역서는 다른 어떤 문헌보다도 많이 인쇄된 초대형 출판물이었다. 조선 후기의 경우 한해에 30만 부 이상 인쇄되었다. 그만큼 수요가 크고 널리 이용되었던 것인데, 당시 사람들에게 역서의 주요 쓸모는 다음 두 가지였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시간 구획을 제공해 준다. 어떤 날의 년·월·일, 즉 날짜를 알게 해 주는 것이다. 지금의 순태양력에서는 특정한 날의 날짜를 알아내는 것은 간단한 공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야말로 간단한 일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쓰던 태음태양력에서는 사정이 그렇지 않았다. 연말 연초 즈음의 날들이 어느 해에 속할지, 월말 월초의 날들이 어느 달에 속할지는 간단한 셈을 통해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태음태양력에서 날짜는 전문가의 복잡한 작업을 거쳐야만 규칙에 맞게 정할 수 있었다. 그 작업의 결과물을 담고 있는 것이 역서였다.

두 번째로는 살면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에 관해 알려주는 기능을 들 수 있다. 역서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구체적으로 길한 날짜[吉日], 길한 시간[吉時], 길한 방위[吉方]다. 어떤 일을 하는 데에 모든 시간이 똑같이 좋거나 똑같이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길일과 길시는 이런 생각을 정교하게 다듬은 것이었다. 하루 중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한 달이나 일 년, 나아가 수백 년 주기의 복잡하고 다양한 여러 층위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 데에 더 적합한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을 가려내서, 그것에 관한 정보를 두루 쓰일 수 있는 형태로 담아낸 것이 역서였다고 할 수 있다. 방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일을 하는 데에 모든 방위가 똑같이 좋거나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사안별로 길한 방위와 그렇지 않은 방위를 가릴 수 있게 하는 정보들을 모아서 집약해 놓았다.

역서의 시간 구획 요소들을 통해 명절이나 집안 제삿날, 빗 갚는 날 등 이미 약속된 날짜들을 알 수 있게 된다면, 길흉의기(吉凶宜忌) 요소들을 가지고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역서 안에서 길일 길시에 관해 알려주는 것이 본문과 말장(末張)에 실린 무수한 역주(曆註)들이었다면, 방위에 관해 그런 구실을 한 대표적인 항목이 연신방위도였다고 할 수 있다.

3. 연신방위도의 구성

연신방위도는 역서의 앞부분에 실렸다. 역서 첫머리에는 일 년 동안의 시간 구획의 핵심적인 내용을 압축해서 담은 월력장(月曆張)을 실었고, 두 번째 장이 연신장(年神張)이었다. 이어 각 달의 역(曆)을 실은 매월장(每月張)이 차례로 실린다. 이런 구성은 조선시대의 모든 상용력에서 마찬가지였다.

연신방위도는 말 그대로 연신(年神), 즉 한해를 주기로 해서 이동하며 자신이 주재하는 방위에 영향을 주는 길흉 신살(神煞)들을 모아놓은 그림이다. 한 해를 단위로 움직인다는 것은 그해 그해에 배정되는 간지(干支), 즉 세차(歲次)에 따라 위치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연신들 중 대표는 오른쪽 첫머리에 실리는 태세(太歲)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자료의 첫머리에 실린 “태세재을미(太歲在乙未)”는 태세가 이 해에는 을미에 있다는 것인데, 을미(乙未)는 이 해의 세차다. 결국 태세가 이 한해를 주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연신들

의 위치는 직접적으로 태세의 위치에 따라 정해진다. 태세는 이 한 해 동안 방위로는 을미의 지(支)인 미(未)의 방위에 머물며 영향을 미친다. 태세의 아래에는 세차에 의해 결정되는 그해의 주요 사항들이 기록된다. 천간오행(天干五行), 지지오행(地支五行), 납음오행(納音五行), 세덕(世德)·세덕합(世德合)의 위치, 토목 건축을 위해 흙을 취하기에 좋은 방위 등이다. 그 아래의 득신(得辛)과 용치수(龍治水)는 한해의 날씨와 풍흉을 점치는 데 쓰이는 요소였다고 한다.

연신방위도의 본 도(圖)는 세 겹의 동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운데에 있는, 색을 나타내는 아홉 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표는 구성도(九星圖)다. 글자들은 오황→사록→삼백→이흑→일백→구자→팔백→칠적→육백→오황...의 순서로 해마다 한 칸씩, 9년을 주기로 이동한다. 구성도는 고대의 낙서(洛書)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한 해의 길방·흉방을 정하는 데 바탕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성도 둘레에는 24개의 방위를 적었다. 그 다음 원에 그 해의 각종 연신들을, 각자 주재하는 방위에 적어 넣었다. 연신들의 이동에는 세차의 간(干)에 따라 움직이느냐, 지(支)에 따라 움직이느냐에 따라 12년 주기, 4년 주기 또는 10년 주기, 5년 주기 등이 있었다.

연신방위도의 오른쪽 칸에는 방위를 선택할 때 고려할 주의사항을 적어놓았다. 그것에 따르면 연신 중 주서(奏書)와 박사(博士)가 머무는 방위만이 적당하고, 다른 방위들은 모두 꺼릴 만한 바가 있으니, 그런 방위들을 써야 할 때에는 이러이런 조건이 갖춰진 날에 쓰라고 한다.

4. 편찬자

이 연신방위도의 작성자는 고종 31년(1894)년에 역서 편찬에 참여했던 관원들이었을 것이다. 이 해 7월에 관상감(觀象監)이 관상국(觀象局)으로 개편되었으니, 그들의 소속도 한해의 중간에 바뀌었을 것이다.

5. 본 자료의 내용 및 자료적 가치

본 자료는 책자 형태의 역서가 아니라, 그 중 연신방위도 부분만 남아 있는 낱장 형태의 자료다. 그래서 표제나 월력장이 없지만, 도(圖)의 내용을 통해 그것이 어느 해 역서의 일부로 제작된 것인지 알 수 있다. 먼저 ‘태세재을미’로부터 이 역서가 을미년 역서임을 알 수 있다. 또 구성도의 배치로부터 이 을미년이 영조 51년(1775)이나 현종 1년(1835)이 아니라 고종 32년(1895)임을 알 수 있다.

이 연신방위도에서 그것의 세부 내용보다 더 주목되는 점은, 그것이 한 장이나 두 장이 아니라 무려 17장이 한꺼번에 같은 곳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병풍 배접지로 쓰이는 과정에서 칼로 오려진 조각들까지 합하면 20장이 훌쩍 넘어간다. 이것들은 모두 고종 32년(1895) 을미년 역서를 위한 동일한 연신방위도다. 이 연신방위도가 일반적인 역서 이용자가 쓰고 남은 책력에서 떼어낸 것이라면, 같은 도(圖)가 이렇게나 많이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역서에 넣기 위해 찍어내기는 했지만 역서로 묶이지 않고 남은 것들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이 연신방위도들의 여백이 책력으로 묶인 적이 있는 것으로 보기에 너무 넓다는 점과, 책으로 묶기 위해 실로 켜 자국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런 추정에서 무게를 더한다. 나아가 이 연신방위도들이, 다수의 동일한 장들을 포함하는 상용력, 대궐에서만 쓰던 역서인 내용삼력(內用三曆), 관상감의 내부 문서인 관상감계목(觀象監啓目) 묶음 등과 함께 발견되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본 자료는 관상감-관상국 관계자가 가지고 있던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함께 발견된 이 네 자료는 조선시대에 음양학 관서였던 관상감과 관련해서 뚜렷한 맥락을 가진, 현장성 있는 자료들이라고 할 수 있

다.

6. 키워드

연신방위도(年神方位圖), 연신도(年神圖), 연신장(年神張), 태세(太歲), 구성도(九星圖), 24방위(二十四方位), 연신(年神), 길방(吉方), 관상감(觀象監), 관상국(觀象局), 을미년(乙未年)

